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 정보화 발전방안 연구

2020년 5월

법제처

김태현

- 차례 -

I. 서론

II. 미국의 법령 체계

1. 미국법 개관
2. 미국법의 법원(法源)
3. 한국 법령체계 및 법령집과의 비교

III. 미국 법령의 분류체계 및 검색

1. 미국 법령의 분류체계
2. 한국 법령 분류체계와의 비교
3. 미국 법령의 검색
4. 한국 법령검색 서비스와의 비교

IV. 미국의 행정절차법

1. 미국의 연방행정절차법
2. 한국 행정절차법과의 비교
3. 한국 행정기본법의 제정 추진

V. 미국의 분야별 법제도 사례

1. 미국의 식품영업 인허가 관련 법제도

2. 미국의 공장 설립 관련 법제도

VI. 결론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Jeong & Likens L.C.
3. 훈련분야 : 전문법제
4. 훈련기간 : 2019. 12. 26. ~ 2020. 4. 26

훈련기관 소개

1. 주소 : 222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4

2. 전화번호 : 213-688-2001

3. E-mail : info@jeonglikens.com

4. 홈페이지 : <http://www.jeonglikens.com>

5. 주요 업무

Litigation

Business Litigation

Employment Litigation

Liability Insurance Disputes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I. 서론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일컬어진다. 정보 접근성, 보유력 및 활용 능력은 일종의 힘으로 간주될 정도로 핵심적인 자원이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동력인 법에 대한 정보 역시 그 접근성, 보유력 및 활용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 정보는 현대사회에서 핵심적인 정보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조선시대에도 경국대전과 같은 성문법전을 국가 차원에서 유지해 왔고 대한민국의 건국 직후부터 서구 법체계를 계수한 성문법체계를 완비하여 왔는데, 이러한 법령은 국가경영의 견인차가 되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주목을 받을 만큼 초고속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는 업적을 남겼는데, 법령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보급은 이와 같은 산업화 및 민주화 달성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국민의식의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 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법령 정보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회 환경 및 국민의 의식의 변화를 정부정책이나 법령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입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법령의 개정 주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후기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고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등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법령도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

였다. 또한 복지 수요의 증대는 관련 법령의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법령 외에도 법규적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이 수만 건에 이르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규칙도 역시 수만 건을 상회한다.

국가가 입법하는 법령 정보의 양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국민들도 종전과 비교하여 법령 정보를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권리의식의 함양과 함께 법치주의의 정착으로 인하여 국민들도 법령 정보를 숙지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는 풍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도 법령 정보 자체를 입수하여 해독하는데 그쳤으나 지금은 법령 정보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가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된 법령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예전의 국가 주도적 입법 추진 체계에서 국민 중심의 법제 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등 입법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 성장동력으로서 선진 법제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법제도 개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다양한 입법 개선 수요 도출·검토 및 외국 법제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나, 현재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 법제정보화시스템은 단순히 법령별로 법령의 내용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법제도 유형별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법제도 정보 및 통계를 생성·활용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법제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관련해

서도 규제와 관련된 자세한 통계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법 수요자가 쉽게 수집·활용할 만한 법제도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다양한 입법 개선 수요를 도출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외 법제도를 연구·분석하여 법제도를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법령의 내용과 매칭시켜 법제도 현황 분석,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법령체계, 법령정보시스템, 행정절차법, 주요 법제도 사례 등을 검토하고 이를 한국의 법령체계, 법령정보시스템,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안 등과 비교하여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 정보화 발전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II. 미국의 법령 체계

1. 미국법 개관

미국은 영국의 보통법체계(Common Law)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왔으나, 그 발전과정에서 영국의 보통법체계와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787년 9월 17일 미국 연방의회는 「미합중국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 of America)」을 제정하고, 1789년 3월 4일 성문헌법을 선포하였다. 미국의 연방 헌법은 성문헌법이라는 점에서 영국의 불문헌법과 구별된다. 미국의 각 주는 연방 정부와 독립된 주정부를 가지며, 각 주의 고유한 법체계를 형성·발전시켰다. 연방 헌법은 연방의 최상위 법규범으로서 다양한 주법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주의 고유한 법체계를 형성·발전시킬 수 있다.

연방 헌법상 최고법 규정(Supremacy Clause)은 각 주의 입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방 헌법과 연방 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연방 법률은 미국의 최고법(supreme law of the land)으로서 주 법률은 이에 위배될 수 없으며, 주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 연방 헌법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및 평등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방 헌법의 이념에 따라 각 주의 의회는 주 법률을 제정하였다.

2. 미국법의 법원(法源)

가. 연방 헌법(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미국의 연방 헌법(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다른 모든 규범의 상위에 있다. 연방대법원은 *Marbury v. Madison* 및 다른 판례에서 미국 헌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 연방 법률과 주 법률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연방 헌법을 인용할 때에는 'U.S. Const.'의 형식으로 표기된다.

나. 조약(Treaty)

미국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의 효력은 연방 법률과 동등하지만, 헌법보다는 하위에 있다. 조약의 체결은 대통령이 하게 되지만 상원의 원 3분의 2 이상의 비준을 얻은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조약과 유사한 것으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이 있는데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가 단독으로 외국과 체결할 수 있다.

만일 조약과 연방 법률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및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다. 연방 법률(Federal Statutes)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federal statutes)은 미국의 최고법을 구성하기 때문에 주 법률은 연방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연방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주정부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규율하게 되며, 반독점, 파산·지급불능, 환경, 지적재산권, 노동, 고용, 은행·증권 규제 및 조세 등계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게 된다.

1) 연방 법률의 구분

연방 의회를 통과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Public Law로 편제된다. Public Law란 공법(公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단체·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공법(共法)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Public Law의 일련번호는 1901년부터 의회에 의하여 배정되기 시작했고, Public Law의 고유번호만을 가지고 연방 법률의 일련번호를 표기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연방 의회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지역에 관한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법률을 만든 경우에는 Public Law 대신 Private Law 또는 Special Law로 분류하고 별도의 법률번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이민법(immigration law) 하에서 개인 구제와 관련하여 제정된 다수의 법률들은 현재 Private Law로서 분류 및 편성되어 있다.

2) 연방 법률의 관리체계

연방 의회는 매 2년마다 선거에 의하여 재구성되며, 의회의 회기도 의원의 임기인 4년이 아니라 그 절반인 2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

의회의 회기번호도 2년의 회기에 따라 부여된다. 이때 각 회기의 의회를 통과하는 연방 법률에 대해서도 해당 회기 내의 제정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가 주어지는데, 이 일련번호와 의회의 회기번호를 조합하여 법률의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있다¹⁾. 법률에 부여된 일련의 고유번호는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특정 법률이 어느 회기에서 몇 번째로 제정된 것인지를 표시해 주는 의미를 갖는다.

1) 미국의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연방 법률이 제정되려면 법안(bill)이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과 상원(Senate)을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법안의 제출은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가능한데, 제출된 순서에 따라 하원에서 제출된 법안에는 "H.R. 000", 상원에서 제출된 법안에는 "S. 000"과 같은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연방 하원 및 상원 모두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을 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렇게 입법된 법률은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으로 보내지고, 다시 국가기록원 내의 연방등록사무소(The Office of Federal Register, OFR)로 보내진다.

이상의 절차가 연방 법률의 공식적인 이송절차이며, 연방등록사무소는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연방 법률을 DB화하여 법률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방등록사무소에서는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연방등록사무소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세 가지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 ① 법률안이 통과된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는 것
- ② Slip Laws의 형태로 출판을 준비하는 것
- ③ 연방 법률 모음집 다음 호에 통과된 법률을 포함시키는 것

3) 연방 법률의 표기방식

미국 연방 법률의 표기방식 역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들의 소재는 물론 그것이 속한 법률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법률에 대한 명칭 부여 방식을 예로 보면, 초기에는 법률명이나 그 약칭의 표기 없이 제정일 정보만으로 Act of February 19, 1813 식으로 표기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성문 법률 수가 증가하면서 이런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고, 그 결과 법률명을 표기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초기의 표기방식은 주로 법률명 앞에 “An Act to…”식의 문구를 붙이는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등의 문장을 삽입하여 법률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각 법률명에 해당 법률의 간략한 내용을 나타내는 용어·제정연도 등을 조합하여, “…Act of 2004” 등과 같은 형식으로 줄여 표기하는 방식이 다시 선호되고 있다.

그 밖에 널리 알려진 법률의 경우에는 속칭(popular name)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 경우 해당 약칭을 법률의 공식 명칭으로 인용하여 쓸 수 있다.

한편 미국 법률명 중에는 해당 법률 내용을 상징하는 단어를 조합하는 대신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실명을 법률의 정식명칭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Sherman Act 등과 같은 표기방식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률명만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법률명과 속칭(popular name)을 연계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정 조문에 대한 표기방식 역시 단일하지 않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독점금지법 중 가격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Robinson-Patman Act이지만 법의 편제상 또 다른 독점금지법인 Clayton Act의 제2조에 위치해 있어서 해당 규정을 인용할 때 Clayton Act 제2조로 불리기도 하고, 15 U.S.C. “13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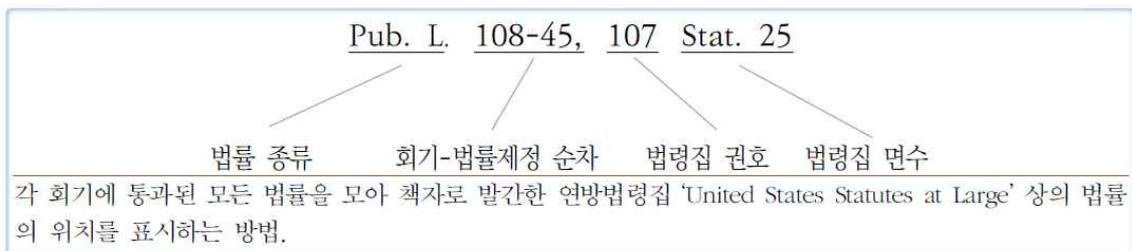
법률의 내용이 실제적인 규정을 담지 않고 기존 법률의 특정 용어, 기간 및 형량 등 일부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연방예금보험공사개혁법(Financi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제312조는 연방예금보험법(Financi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ct) 제41조를 대체한 것이고, 해당 규정을 인용할 때 12 U.S.C. "1831(r)라는 방식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즉 같은 규정이 당초 제정된 법, 현재 편입되어 있는 법 및 법전에 속해 있는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기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법령·조문 표기가 나타난 것은 미국의 법률 제·개정 방식이 우리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법률이 처음 제정될 당시와 그것이 법전에 수록될 때의 형태가 서로 다를 수 있는 미국 특유의 입법 관행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특정 사항을 규율하는 조문이나 한국의 특정 법률에 해당하는 규정을 미국 법령에서 정확히 찾아내려면 먼저 미국 법령 정보의 수록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미국 연방 법률의 표시 방법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정 당시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Public Law No.109-1'의 경우는 보편적인 규범력을 갖는다는 의미의 Public Law에 해당하며, 109번째 회기에 첫 번째로 제정된 법률이다.



둘째, 'An Act to...'의 본문에서 단일 법률명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각 법률의 첫 부분에 나오는 용어 및 제정연도 등을 조합하여 '... Act of 2009'와 같이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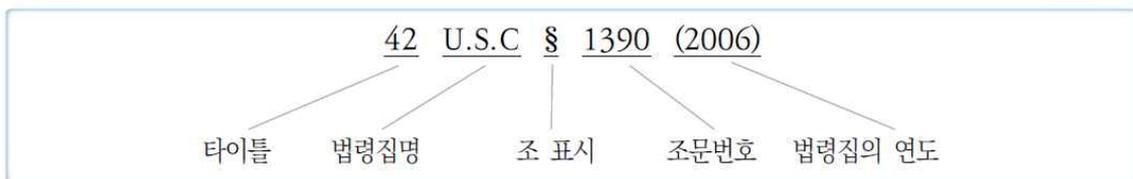
넷째, 일명 ‘속명(popular name)’이 붙는 경우도 있으며 그 자체가 공식 명칭으로 인용된다. 해당 법률 입안자인 의원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경우(Sherman Act 등)를 예로 들 수 있다.

연방 법률의 법조문을 표시하는 방법은 연방 법률 뒤에 조문 표시를 덧붙이는 방식이므로, 연방 법률을 표시하는 방법 이상으로 다양하다.

첫째, 최초 제정 당시의 법률 중심으로 조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둘째, 법률이 다른 표기법을 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편제에 속하는 방식에 따라 조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자료에서 인용될 때 주로 쓰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 표기법인데, 주제별 법전 편찬(U.S.C.)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조 표시 방법이다.



4) 연방 법률의 발간

연방 법률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간행된다.

첫째 연방 의회의 회기별 법률을 시간 순으로 “U.S. Statutes at Large”에 수록하여 간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그다지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둘째, “U.S. Code(‘U.S.C.’)”라 불리는 미국 법전이 있다. U.S.C는 연방 법률을 50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수록한 공식법전으로서 대부분의 법조 관련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셋째, 민간 출판사(West Publishing사 등)에서 법률의 연혁, 판례, 학설,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같이 수록하여 출간한 비공식법전이 있다. West Publishing사의 “U.S. Code Annotated(“U.S.C.A.’)”와 Michie사의 U.S. Code Services(“U.S.C.S.’)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연방 및 주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입법 순서나 주제에 따라 재편성하여 다양한 법령집에 수록하여 발간해 오고 있다. 그 수록 형태에 따라 법령집에 대한 고유의 이름이 부여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Slip Law, Session Law, Code, Annotated Code 등이다. 이 가운데 Code나 Annotated Code가 미국 연방 법률 검색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다만, Slip Laws나 Session Laws 역시 보완자료로서 활용가치가 크며, 현행 Code방식의 법전 편성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 속보식(速報式) 법전(Slip Laws, Advance Session Law Services)

속보식 법전은 법률이 의회를 통과할 때마다 해당 법률의 내용을 팜플렛 형식으로 소개해 놓은 법률자료이다. Slip Laws로 알려진 단행본 법전 형태가 이 방식에 해당한다. 속보식 법전의 장점은 무엇보다 최신 법률의 내용을 가장 빨리 발간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Slip Laws를 발간하고 있다.

다만 주 Slip Law의 경우 주마다 형식상 차이가 크고 주 내에서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 법령 정보로서의 효용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도 한국에서는 주의 Slip Law를 실시간으로 입수해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주의 법령에 관한 최신 정보는 각주 의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발행하는 속보식 법전 외에 민간 출판사에서 신속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회기별 법전 속보판(Advance Session Law Services)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최신 입법 동향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West Publishing Company사의 United States Code Congressional and Administrative News(U.S.C.C.A.N.)와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사의 United States Code Service(U.S.C.S.)의 Advance판이 대표적이다.

나) 회기별 분류 방식의 법전(Session Laws)

회기별(會期別) 법전은 연방 의회 회기 중에 제정된 Slip Laws를 모아 시기별로 모아놓은 법전으로서 흔히 Session Laws라고 불린다. 미국 연방의회가 발간하는 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가 대표적이다.

회기별 법전은 통상 의회의 회기연도가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야 출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신 법률의 내용을 신속히 확인해야 할 때에는 앞에서 본 회기별 법전 속보판(Advance Session Law Services)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 주제별 분류 방식의 법전(Codes)

Code는 법률을 주제별로 구성한 법전이다. 즉 법률의 규정 자체는 그대로 담아내되 그 중 주제가 유사한 규정들을 같은 주제끼리 묶어서 다시 편성한 것이다. 이러한 재편성 과정에서는 법률 개정 시마다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고 개정 전의 법률을 삭제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법률을 검색하려는 경우는 Codes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국내에서 미국 법률 검색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

용되는 법전인 United States Codes('U.S.C.')가 바로 주제별 분류 방식에 해당한다.

하지만, Codes형태의 법전은 같은 법률이라도 주제에 따라 서로 다른 편·장으로 나뉘어 편집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내용 전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오히려 검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기존 법률이 제정된 후 재편성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발간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률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또한 단순히 법률 규정만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과 관련된 판례, 학설, 입법자의 의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미국 법률에 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주석식 법전(Annotated Codes)이 보다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라) 주석식(註釋式) 법전(Annotated Codes)

주석식 법전은 법률 조문의 끝에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판례, 학설, 유권해석 등을 수록함으로써 법전 이용자에게 풍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법전이다.

주제별 법전(Code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이 제·개정되거나 폐기될 때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발간하게 된다.

이 때문에 주석식 법전은 법제 실무자 및 학계 전반에 걸쳐 유용한 법률 검색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West Publishing Company사의 United States Codes Annotated(“U.S.C.A.”)가 대표적이다.

<미국법률의 발간>

법률자료형식		유형	특징	대표 법전 (발간주체)
제정 순서별 편집	속보식 법전	Slip Laws, Advance Session Law Services	단행 법률의 제정시마다 팜플렛 형식으로 신속한 법률 정보 제공	U.S.C.C.A.N., U.S.C.S.Advance (민간)
	회기별 법전	Session Laws	모든 법률, 조약, 대통령성명 등을 의회통과 시기에 따라 순서대로 수록	U.S. Statute at Large(정부)
주제별 편집	주제별 법전	Codes	현행법을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일련번호에 따라 수록	U.S.C.(정부)
	주석식 법전	Annotated Codes	Codes에 수록된 법률에 판례, 입법취지, 해석 등 첨부	U.S.C.A..(민간)

라. 연방규칙 및 행정명령(Federal Regulations)

대통령에게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을 발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연방 행정기관은 행정규칙(rules and regulations)을 발령할 수 있다. 연방 행정명령은 연방 헌법의 “최고법 조항(Supremacy Clause)”에 따라 주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의 행정입법권은 연방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중요한 수단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연방 법률의 입법을 결정하는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지만, 연방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연방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입법할 행정입법권은 대통령과 연방 행정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 행정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악관 소속의 예산관리처(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소속 정보규제국(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의 역할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정보규제국(OIRA)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0년에 ‘행정간소화법(Paperwork Reduction Act of 1980)’의 제정으로 설립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에 의하여 1981년에 발령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2291호는 정보규제국에 연방행정부에서 입법하는 모든 행정명령을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하여 1994년에 발령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2866호는 정보규제국의 권한을 더욱 강화했다. 정보규제국은 행정부가 만드는 행정명령의 초안 단계 및 최종 단계에서 행정명령을 심사하여 행정명령이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경우 행정명령의 경제성 및 타당성 등도 분석한다.

1994년 이후 정보규제국은 연간 평균 500건~700건의 중요 행정명령을 심사하고 있으며, 행정명령의 입법에 있어서 정보규제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방 하위법령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Fed. Reg’)에 연대별로 발간되고 있다. 또한, 연방 하위법령을 수록한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도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연방행정부가 발한 명령들은 Federal Register(Fed. Reg.)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U.S.C.와 유사하게 50편으로 구성된 주제별 행정명령집인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를 통해서도 행정명령을 검색할 수 있다.

C.F.R.의 각 권은 매년 1회 갱신되며, 주제별로 묶어서 분기별로 발간되기도 한다.

Titles 1~16: 매년 1월 1일 갱신.

Titles 17~27: 매년 4월 1일 갱신.

Titles 28~41: 매년 7월 1일 갱신.

Titles 42~50: 매년 10월 1일 갱신.

마. 판례(Cases)

영미법 체계에서 판례는 가장 중요한 법원이며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법관은 상급 법원이나 동급 법원에서 먼저 내린 판결을 범규범의 하나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가진 재판에 적용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판례를 수록한 판례집이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의 판결을 모아 발간하는 판례집은 다음과 같다.

- ① 연방정부가 발간하는 공식 판례집인 "U.S. Reports('U.S.')"
- ② 공식 판례집의 민간 버전의 "Supreme Court Reporter('S.Ct.')" - 공식 판례집보다 먼저 발간
- ③ 두 번째 민간 버전인 "The Lawyers'f the Supreme Court Reports('L.Ed.')" - 주석 포함

그리고 연방항소법원(Federal Circuit Courts of Appeal)의 결정은 "Federal Reports('Fed.')"에 수록되어 발간된다. 연방항소법원의 판례집의 수량이 급속하게 방대해지자 출판사들은 제2시리즈('Fed.2d'), 제3시리즈('Fed.3d')를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연방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s)의 결정은 “Federal Supplement(‘F.Supp.’)”에 수록되어 발간되고 있다.

한편, 주(州)법원의 판례와 관련하여, 우선 주 1심법원(state trial court)의 판결은 발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 2심법원(intermediate appellate courts)의 주요 판결과 주 대법원의 모든 판결은 National Reporter System에 의해 같이 묶어 발간되고 있다.

“West Publishing”은 미국 50개 주와 D.C.(District of Columbia)를 7개 지역(Atlantic, North Eastern, North Western, Pacific, South Eastern, South Western, Southern)으로 나누어 각각 판례집(“Regional Reporter”)을 발간하고 있다.

주의 판례를 모두 모으면 연방 판례의 약 2배 정도가 된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연방과 주 판례를 법조 관계자들이 모두 읽을 수 없으므로 민간출판사들은 판례를 법 영역별로 정리하여 요약한 “Case Digests”를 발간하고 있다. West Publishing社는 Regional Reporter와 Federal Reporter Systems에 있는 모든 판례에 대한 Digest인 “Decennial Digest”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특정 판례를 다른 법원에서 인용(citation), 동의(concur) 또는 파기(overrule)하는 경우 등 서로 연관된 판례들을 정리한 “Shepard’s Citations”를 통하여 관련 판례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Shepard’s Citations는 특정 판례를 인용한 논문까지도 같이 볼 수 있으므로 법조 관계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바. 주(州) 헌법과 법률(State Constitutions & Statutes)

미국의 각 주는 개별적으로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의 헌법은 다른 주법에 우선하나 연방 법률보다는 하위 규범에 해당한다. 각 주의 헌법은 “California Constitution(‘Cal. Const.’)”과 같이 주 명칭을

붙여서 표기한다.

주 법률은 연방 헌법과 연방 법률 및 주 헌법의 하위에 있지만 실제로 주 법률은 미국의 법령 체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규범이 주 법률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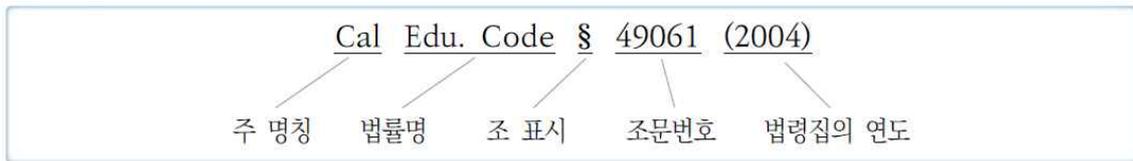
연방수정헌법 제10조에 따라 연방 헌법에 부여되지 아니하였거나 연방에게 허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주에 법령을 입법할 권한이 있다.

연방 의회 및 연방 정부가 입법하는 분야가 주 정부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주 의회와 주 정부의 입법 분야는 그 밖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게 된다. 주에서 입법하는 주요 영역은 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법 및 가족법 등이다.

각 주의 법률들은 공식법전 및 비공식법전으로 간행된다. 비공식법전의 경우 법률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회사법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연방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주 차원에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주의 법이 그 분야의 미국 법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주 법률 역시 연방 법률과 마찬가지로 속보식 법전, 회기별 법전, 주제별 법전 및 주석식 법전의 다양한 형태로 법령집이 발간된다.

주의 법률을 표기하는 방법은 주별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각 단행 법률을 발간한 Slip Law, Session Law 및 주제별 법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표시방법은 U.S.C.의 표기와 유사하다.



1) 속보형 법률집 및 회기별 분류방식의 법률집

각 주의 법전 제정이나 공표방식은 연방과 큰 차이가 없다. 대다수의 주들은 주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먼저 속보식 간행물(slip laws) 형태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취합하여 회기별 법전(session law)을 발간한다. 상업적 목적의 민간 법전도 많은 주에서 발간되고 있다.

2) 주제별 분류방식의 법률집(State Codes)

주제별 법률집도 각 주에서 출판되고 있으나 그 형태는 천차만별이다. 한편 법률집 갱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주도 있으므로 각 주의 민간 출판업자들이 수시로 발간하는 법률자료를 통하여 최신 법률정보를 확인해야 할 경우도 있다.

3) 주석식 법률집(Annotated Codes)

주석식 법전도 대다수의 주에서 발간되고 있으며, 주 법률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주석식 법전에는 연방의 주석식 법전과 마찬가지로 색인과 목차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참고자료 목록도 제공되고 있다.

사. 주 행정명령(State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주 행정기관이 발령하는 주 행정명령은 연방 행정명령과 유사한 형태와 목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주 행정명령은 주로 주민들의 다양한 행위에 대한 면허 등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주 법률과 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 정부의 행정명령은 연방의 법령보다 시민들의 생활에 훨씬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아. 지방조례(Ordinances)

County 및 City 등 지방자치단체도 입법기관 및 행정기관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Boards' 또는 'Councils'라고 불리며, '조례(ordinances)'를 만들게 된다. 조례는 주 법률 및 행정명령이 위임하는 범위에서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으로 토지활용에 관한 통제, 초·중등교육, 경찰과 소방, 쓰레기 처리, 사업 인허가, 환경규제, 주택, 대중교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례 및 규칙 등을 만들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8만 6,000개 이상에 이르고 있다.

자. 모델법

미국에는 성문법은 아니지만 일종의 모델법으로서 각 주의 입법에 반영되는 규범들이 있다. Uniform Law, Model Act, Restatement 및 Restatement of Law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 Uniform Law는 19세기 말부터 각 주의 법률을 통일하자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두된 통일주법안이다. 미국의 각 주가 동일한 내용의 제정법을 채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국의 법률체계가 가진 태생적 복잡성과 주별 상이성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법률을 통하여 통합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Uniform Law의 제정 주체는 1892년 설립된 통일주법제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the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이다. 이 위원회는 50개 주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채택된 많은 Uniform Law들이 현재 각 주의 의회를 통과하여 주 법률로 성문화되어 집행되고 있다.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및 통일유가증권법(Uniform Negotiable Instruments Law) 등은 거의 모든 주가 채택하고 있는 Uniform Law의 대표적 예이다.

다른 모델법의 형태로서 Restatement를 들 수 있다. 이 역시 각 주의 법률이 가진 상이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설립주체가 미국 내 유력 변호사, 판사 및 교수들이 주축이 된 전미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이라는 점이 Uniform Law와 다른 점이다.

또한 제정방식에 있어서도 각 법률 분야마다 각 주의 현행 법률 중 가장 모범적인 주의 법률을 선택하되, 그 장점 및 단점에 관하여 해설 및 비판을 첨부하여 각 주의 법률 제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도 Uniform Law와 차이가 있다.

현재 형법(Criminal Law), 계약법(Contract), 불법행위법(Torts), 대리(Agency), 대외관계법(Foreign Relations Law), 섭외사법(Conflict of Law) 등 여러 분야에 걸쳐 Restatement가 제정되어 있다.

<미국법의 법원(法源)>



3. 한국 법령체계 및 법령집과의 비교

가. 한국 법령체계와의 비교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고, 헌법 - 법률/조약 - 명령·규칙 - 자치법규 순의 단계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국가의 기본목표, 통치작용 및 조직구조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및 명령 등 하위 규범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헌법에 위반되는 하위 규범은 무효가 된다.

2) 법률과 조약

국회의 법률 입법과 관련된 사항은 헌법 및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과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이 정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형태로 규정되어야 한다.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은 내용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약은 국가 사이에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체결된 합의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

3) 명령과 규칙

명령은 국가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행정

부에서 만드는 경우 그 순위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으로 다시 구분된다. 이러한 명령은 행정부가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으로 법규의 성질을 갖고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행정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행정규칙이 있다.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법규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행정규칙은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 행정규칙의 예로는, 조직규칙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분장규정 등이 있고, 근무규칙으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이 있다.

그리고, 정부 소속 기관 외에 국회(국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법원(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규칙), 감사원(감사원규칙) 등에서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4)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가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여 만드는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헌법 제117조제1항). 자치법규는 제정 주체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규칙으로 구분된다.

나. 한국 법령집과의 비교

1) 대한민국 관보

대한민국 관보는 정부에서 발간하는 공고지로, 헌법 및 법령의 공포수단이다. 법령상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보는 근무일에 1회 1권 발간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대한민국헌행법령집

한국법령정보원(www.lawinfo.or.kr)에서 발행하고 있는 현행 종합법령집으로 국가 표준 법령집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 50권 8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 1회 추록하는 가제식 편제를 하고 있다.

가) 발간 연혁

(1) 대한민국법령집(1954)

대한민국 법령집은 1954년 10월 30일, 3권 3책으로 법제처에서 발간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새로 제정된 각종 법령의 현황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이후 1962년 4월 1일, 6권 9책으로 분책되었다.

법령 건수의 증가로 인하여 법령 편별을 19개로 분류하여 헌법, 법률·조약·각령 및 부령과 중요한 훈시·고시 및 예규 등을 수록하였다.

(2) 대한민국헌행법령집(1963)

대한민국헌행법령집(1963)은 1963년 3월 30일, 16권 16책으로 법제처에서 편찬·발간하였다.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 7. 15. 법 제659호)의 제정에 따라 구법령정리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령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새롭게 발간하였다.

1963년 3월 1일 기준 현재 유효한 모든 법령, 즉 헌법·법률·국가재건최고회의령 및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긴급명령·대통령령·국무원령·각령·부령뿐만 아니라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대법원규칙·감

사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법령의 성격을 가지는 훈령 기타 고시 등을 수록하였다. 이후 70회를 넘는 추록을 보급하였다.

(3) 대한민국헌행법령집(1974)

대한민국헌행법령집(1974)은 1974년 11월 30일, 28권 28책으로 법제처에서 편찬·발간하였다. 1963년 발간된 헌행법령집의 노후·파손이 심하고 정부기구의 대폭 개편에 따라 편제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이 헌행법령집은 조직법규와 작용법규를 같은 편에 수록함으로써 각 부처 또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배가하는 편제로 구성되었다.

(4) 대한민국헌행법령집(1989)

대한민국헌행법령집(1989)은 1989년 11월 30일, 50권 50책으로 법제처에서 편찬하고 법령편찬보급회에서 발간하였다. 1974년 발간된 헌행법령집이 발간 후 장시간의 경과로 가제 정리 및 현행성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신판법령집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법령집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총 45편 50권(50책) 구성으로 이전의 헌행법령집과 비교하여 책 및 글자 크기를 확대하였다.

대한민국헌행법령집 추록은 1990년 3월 31일 제1회 추록을 시작으로 연 8회 발간·보급하였으나, 현행성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1992년 1월부터 연 12회 발간·보급하고 있다.

헌행법령집의 보급 부수는 1997년 제86회 추록 25,180부의 발간을 최고점으로 하여, 이후 행정기관의 예산감축과 인터넷 법령 정보의 무상보급 확산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다.

나) 발간주체의 변화

(1) (재)법령편찬보급회

1981년 3월 5일 「법령집등 편찬 및 간행 규정」을 개정하여 비영리 법인이 법령집 발간·보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바뀌었다. 이후 1981년 6월 25일 「법령집등 편찬 및 간행 규정」 제7조에 따라 법령집의 발간·보급 업무를 전담하는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법령편찬보급회가 설립되었고, 법령집 보급사업자로 법제처의 지정을 받았다.

1989년 12월 21일 법률 제4141호 「한국법제연구원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재단법인 법령편찬보급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한국법제연구원이 승계하도록 규정하여 1990년 7월 29일 법령편찬보급회는 해산되었다.

(2)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에서 현행법령집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법령보급에 관한 정보화를 촉진시키며 법제연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특수법인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1989년 12월 21일 법률 제4141호 「한국법제연구원법」이 제정되어 1990년 7월 30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설립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전 재단법인 법령편찬보급회의 법령집 보급 사업을 승계하였다.

(3) (재)법령정보관리원

2010년 11월 10일 대통령령 제22480호 「법령집 등 편찬·발행 및 법령 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법령 정보의 유지·관리 업무를 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법인 법령정보관리원의 설립 기반을 마련하였다.

재단법인 법령정보관리원은 대한민국 법령 정보의 실무적 관리기관으로서 현행법령집 및 전산화된 법령 정보의 유지·관리 업무를 같이 수행하며, 대한민국 법령의 신속하고 정확하고 제공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법령정보관리원은 2018년 5월 24일 한국법령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 법전

법전으로는 주제별 또는 목적별로 다양한 소법전과 대법전이 발간되어 있다. 대법전(법전출판사), 대법전(법률신문사), 헌법전(현암사), 소법전(현암사), 큰글민사법전(법률출판사), 글육법전(세창출판사), 교육법전(교육법전출판회) 등이 있다.

4) 자치법규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하는 자치법규집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행되고 있다.

5) 조약집

외교부에서 대한민국 조약집을 다자조약 및 양자조약으로 구분하여 발간하고 있다.

6) 소결

미국의 경우 연방과 주로 나뉘어져 있어 법령집 관리에 있어서도 연방과 주에게 각각 법령집 발간이 되고 있어 통일된 체계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한국의 경우 법제처 산하 한국법령정보원 주관으로 통일적인 법령집 발간이 이뤄지고 있다. 각 부처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기관에 필요한 법령집이나 자치법규집을 발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령 정보 외에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수록한 민간 법령집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다양한 법제 관련 정보를 수록한 민간 법령집의 이용이 활성화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Ⅲ. 미국 법령의 분류체계 및 검색

1. 미국 법령의 분류체계

가. 미국 법령의 분류체계

주제별 법령집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United States Code('U.S.C.')이다.

U.S.C.는 총 50개의 주제에 따라 編(title)로 편성되어 있다. 각 주제의 나열 순서는 제1편에서 제5편까지는 총칙, 의회, 대통령, 국기, 국새, 정부직위, 정부조직 등 헌법 사항에 관련된 규범들이 우선 배정되어 있고, 제7편부터 제50편까지는 주제명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열거되어 있다.

<USC 편별 주제명>

1. 總則(General Provisions)
2. 議會(The Congress)
3. 대통령(The President)
4. 國旗 및 國璽, 政府 職位, 州(Flag and Seal, Seat of Government, and the States)
5. 政府組織 및 公務員(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6. 政府保證債(Surety Bonds)
7. 農業(Agriculture)
8. 外國人, 國籍(Aliens and Nationality)
9. 仲裁(Arbitration)
10. 軍隊(Armed Forces)
11. 破産(Bankruptcy)
12. 金融機關 및 金融業(Banks and Banking)
13. 人口調查(Census)
14. 海岸警備(Coast Guard)

15. 商業 및 去來(Commerce and Trade)
16. 國土管理(Conservation)
17. 著作權(Copyrights)
18. 犯罪 및 刑事節次(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19. 關稅(Customs Duties)
20. 教育(Education)
21. 食品 및 醫藥品(Food and Drugs)
22. 外交 및 通商(Foreign Intercourse) Relations and
23. 幹線道路(Highways)
24. 病院 및 保護施設(Hospitals and Asylums)
25. 아메리칸 인디언(Indians)
26. 內國稅法(Internal Revenue Code)
27. 飲酒類(Intoxicating Liquors)
28. 司法府 및 司法節次(Judicial and Judiciary Procedure)
29. 勞動(Labor)
30. 鑛物地域 및 採鑛業(Mineral Lands and Mining)
31. 通貨 및 財政(Money and Finance)
32. 國家警備(National Guard)
33. 航空 및 航海(Navigation and Navigable Waters)
34. 海軍(Navy)
35. 特許(Patents)
36. 愛國團體 및 儀典, 行事 등(Patriotic Societies and Observances)
37. 奉仕機關에 대한 補助金 및 財政支援 등(Pay and Allowances of
the Uniformed Services)
38. 報勳(Veterans' Benefits)
39. 遞信(Postal Service)
40. 公物, 公共財産 등(Public Buildings, Property and Works)
41. 公共契約(Public Contracts)
42. 公衆保健 및 厚生(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43. 公共用地(Public Lands)
44. 公共印刷 및 文書(Public Printing and Documents)

45. 鐵道(Railroads)
46. 海運(Shipping)
47. 電信, 電話, 無線通信(Telegraphs, Telephones, and Radiotelegraphs)
48. 領土 및 附屬島嶼(Territories and Insular Possessions)
49. 交通(Transportation)
50. 戰爭 및 國防(War and National Defense)

연방행정명령법전의 Title은 다음과 같이 50개(List of regulation titles)로 나뉘어져 있다. 연방법전(US Code)도 50개의 Title로 나뉘어 있는 점과 유사하나, 연방법전과 연방행정명령법전의 Title의 명칭 및 순서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미국 행정명령법전의 분류체계>

- Title 1: General Provisions
- Title 2: Grants and Agreements Title 3: The President
- Title 4: Accounts
- Title 5: Administrative Personnel Title 6: Homeland Security
- Title 7: Agriculture
- Title 8: Aliens and Nationality
- Title 9: Animals and Animal Products
- Title 10: Energy
- Title 11: Federal Elections Title 12: Banks and Banking
- Title 13: Business Credit and Assistance
- Title 14: Aeronautics and Space (also known as the Federal Aviation Regulations, administered by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Title 15: Commerce and Foreign Trade Title 16: Commercial Practices
- Title 17: Commodity and Securities Exchanges
- Title 18: Conservation of Power and Water Resources Title 19:

Customs Duties

Title 20: Employees' Benefits

Title 21: Food and Drugs(administer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the U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Title 22: Foreign Relations Title 23: Highways

Title 24: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Title 25: Indians

Title 26: Internal Revenue

Title 27: Alcohol, Tobacco Products and Firearms Title 28: Judicial Administration

Title 29: Labor

Title 30: Mineral Resources

Title 31: Money and Finance: Treasury Title 32: National Defense

Title 33: Navigation and Navigable Waters Title 34: Education

Title 35: Reserved (formerly Panama Canal) Title 36: Parks, Forests, and Public Property Title 37: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Title 38: Pensions, Bonuses, and Veterans' Relief Title 39: Postal Service

Title 40: Protection of Environment (administered by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itle 41: Public Contracts and Property Management Title 42: Public Health

Title 43: Public Lands: Interior

Title 44: Emergency Management and Assistance Title 45: Public Welfare

Title 46: Shipping

Title 47: Telecommunication (also known as the "FCC Rules", administered by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Title 48: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System

Title 49: Transportation (administer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itle 50: Wildlife and Fisheries

주 법령의 경우에도 연방 법률과 비슷한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주별로 다른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 주 법률은 29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고, 워싱턴 주의 경우는 거의 100개 가까운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며, 메사추세츠 주의 경우는 크게 5개 분야로 대별하고, 그 아래 300개 가까운 Chapter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법의 분류체계>

1.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2. 민법(Civil Code)
3.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4. 상법(Commercial Code)
5. 회사법(Corporations Code)
6. 교육법(Education Code)
7. 선거법(Elections Code)
8. 증거법(Evidence Code)
9. 가족법(Family Code)
10. 금융법(Financial Code)
11.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12. 식품 및 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Code)
13. 주정부법(Government Code)
14. 항만 및 항해법(Harbors and Navigation Code)
15.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16. 보험법(Insurance Code)
17. 노동법노동법(Labor Code)
18. 군사 및 보훈법(Military and Veterans Code)
19. 형법(Penal Code)
20. 유언법(Probate Code)

21. 공공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22.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23. 공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24.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25. 지선 및 간선도로법(Streets and Highways Code)
26. 실업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Code)
27. 차량법(Vehicle Code)
28. 수법(Water Code)
29. 복지 및 공공시설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2. 한국 법령 분류체계와의 비교

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분류체계

한국법령정보원에서 발간하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은 45편, 50권, 82책으로 법령을 분류하고 있으며, 편별·권별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분류체계>

권별	편별	내용
1(I)	1. 헌법	헌법전, 국가·국민, 헌법재판소
1(II)	2. 국회	국회·국회의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2	3. 선거·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민투표, 정당·정치자금
3(I)	4. 행정일반(1)	행정조직일반
3(II)	4. 행정일반(2)	행정작용일반, 문서·관인
4	5. 국가공무원	통칙, 임용, 보수·실비변상, 복무·능력·교육훈련, 징계·소청, 연금
5	6. 법원	조직, 법원행정, 집행관, 법무사
6(I)	7. 법무(1)	행정조직·통칙, 법무행정
6(II)	7. 법무(2)	변호사·공증인, 국적·출입국, 법률구조·범죄피해자구조
7	8. 민사법(1)	민법, 상법, 민사절차(1)
8	8. 민사법(2)	민사절차(2), 등기, 공탁, 가족관계등록
9(I)	9. 형사법(1)	형법, 보안처분
9(II)	9. 형사법(2)	형사절차, 교정·보호, 형사보상, 사면·복권
10	10. 지방제도(1)	행정조직·통칙, 지방자치, 지방공무원(1)
11(I)	10. 지방제도(2)	지방공무원(2), 지방재정(1)
11(II)	10. 지방제도(3)	지방재정(2), 지방공기업, 지역개발
12(I)	11. 경찰(1)	행정조직·통칙, 경찰직무, 경찰공무원, 경비·방호
12(II)	11. 경찰(2)	보안, 교통
13(I)	12. 민방위·소방(1)	민방위, 소방(1)

13(Ⅱ)	12. 민방위·소방(2)	소방(2), 재난관리
14(Ⅰ)	13. 군사(1)	행정조직·통칙, 군인·군무원인사, 상훈·예식·보상
14(Ⅱ)	13. 군사(2)	군수·재무, 군사보안·군사시설, 군통신, 계엄·통합방위·징발, 군법·군사법원, 비상대비자원관리
15(Ⅰ)	14. 병무	행정조직·통칙, 병무, 예비군
15(Ⅱ)	15. 국가보훈	행정조직·통칙, 국가보훈
16	16. 교육·학술(1)	행정조직·통칙, 학교교육(1)
17(Ⅰ)	16. 교육·학술(2)	학교교육(2), 학교보건
17(Ⅱ)	16. 교육·학술(3)	학·예술진흥, 인적자원개발·사회교육, 국외유학·재외국민교육, 체육·청소년육성
18(Ⅰ)	17. 문화·공보(1)	행정조직·통칙, 문화·예술
18(Ⅱ)	17. 문화·공보(2)	문화재, 언론·출판·저작권, 방송, 종교·사회단체
19(Ⅰ)	18. 과학·기술(1)	행정조직·통칙, 과학기술진흥
19(Ⅱ)	18. 과학·기술(2)	원자력, 천문·기상
20	19. 재정·경제일반(1)	행정조직·통칙, 예산·회계, 국유재산(1)
21	19. 재정·경제일반(2)	국유재산(2), 물품관리, 채권관리, 회계검사, 정부투자기관관리, 공인회계사, 물가·공정거래·외자, 통계
22(Ⅰ)	20. 내국세(1)	행정조직·통칙, 조세통칙(1)
22(Ⅱ)	20. 내국세(2)	조세통칙(2), 목적세, 간접세, 직접세(1)
23	20. 내국세(3)	직접세(2)
24	21. 관세	행정조직·통칙, 관세
	22. 담배·인삼	통칙, 담배, 인삼
25(Ⅰ)	23. 통화·국채·금융(1)	행정조직·통칙, 통화·국채, 금융통칙, 금융기관·금융업(1)
25(Ⅱ)	23. 통화·국채·금융(2)	금융기관·금융업(2), 신탁업, 보험
25(Ⅲ)	23. 통화·국채·금융(3)	증권·자본시장, 외환, 금융지원 등, 저축 장려
26	24. 농업(1)	행정조직·통칙, 농지, 양정, 인삼, 농

		정(1)
27	24. 농업(2)	농정(2)
28(I)	25. 축산	행정조직 · 통칙, 축산진흥, 초지 · 사료, 가축위생 · 축산물 검사, 경마 등
28(Ⅱ)	26. 산림	행정조직 · 통칙, 산림
29(I)	27. 수산(1)	행정조직 · 통칙, 수산진흥, 수산업
29(Ⅱ)	27. 수산(2)	수산자원보호, 수산생물질병 관리, 어항 · 어선
30(I)	28. 상업 · 무역 · 공업(1)	행정조직 · 통칙, 중소기업, 상업 · 상공인단체
30(Ⅱ)	28. 상업 · 무역 · 공업(2)	무역, 공업
31(I)	29. 공업규격 · 계량	행정조직 · 통칙, 산업표준, 공산품품질관리, 계량
	30. 산업재산권(1)	행정조직 · 통칙, 특허 · 실용신안(1)
31(Ⅱ)	30. 산업재산권(2)	특허 · 실용신안(2), 의장 · 상표
32	31. 에너지이용 · 광업	행정조직 · 통칙, 에너지이용, 광업
33	32. 전기 · 가스	행정조직 · 통칙, 전기, 가스
34(I)	33. 국토개발 · 도시(1)	행정조직 · 통칙, 국토개발, 도시(1)
34(Ⅱ)	33. 국토개발 · 도시(2)	도시(2)
35(I)	34. 주택 · 건축 · 도로(1)	행정조직 · 통칙, 주택
35(Ⅱ)	33. 주택 · 건축 · 도로(2)	건축, 도로
36(I)	35. 수자원 · 토지 · 건설업(1)	행정조직 · 통칙, 수자원, 토지 · 측량(1)
36(Ⅱ)	35. 수자원 · 토지 · 건설업(2)	토지 · 측량(2), 건설업 · 건설기계관리
37(I)	36. 보건 · 의사(1)	행정조직 · 통칙, 보건(1)
37(Ⅱ)	36. 보건 · 의사(2)	보건(2), 의사 · 혈액관리
38(I)	37. 약사	행정조직 · 통칙, 약사, 마약류, 화장품
	38. 사회복지(1)	행정조직 · 통칙, 사회복지통칙, 생활보

		호(1)
38(Ⅱ)	38. 사회복지(2)	생활보호(2), 재해구호, 아동·노인·장애자·모자복지(1)
38(Ⅲ)	38. 사회복지(3)	아동·노인·장애자·모자복지(2), 사회보험, 가정의례
39(Ⅰ)	39. 환경(1)	행정조직·통칙, 수자원, 환경보전(1)
39(Ⅱ)	39. 환경(2)	환경보전(2)
39(Ⅲ)	39. 환경(3)	환경보전(3)
39(Ⅳ)	39. 환경(4)	환경보전(4), 폐기물관리
40	40. 노동(1)	행정조직·통칙, 노정, 근로기준, 산업안전
41(Ⅰ)	40. 노동(2)	고용, 직업훈련
41(Ⅱ)	40. 노동(3)	노동보험·복지
42	41. 육운·항공,관광(1)	행정조직·통칙, 교통안전·교통정비, 철도, 궤도
43(Ⅰ)	41. 육운·항공,관광(2)	관광, 도로운송
43(Ⅱ)	41. 육운·항공,관광(3)	물류, 항공
44	42. 해운(1)	행정조직·통칙, 해상운송, 선박, 선원·어선원·항만인력(1)
45	42. 해운(2)	선원·어선원·항만인력(2), 항만, 해상보안, 해난심판, 연안관리
46(Ⅰ)	43. 정보통신	행정조직·통칙, 우정, 정보통신(1)
46(Ⅱ)	43. 정보통신	정보통신(2), 전파, 체신금융
47	44. 외무	행정조직·통칙, 외무공무원, 영사, 재외국민, 해외이주, 국제협력
48(Ⅰ)	45. 조약(1)	다자조약(1)
48(Ⅱ)	45. 조약(2)	다자조약(2)
49	45. 조약(3)	양자조약
50	색인	가·나·다순 색인총목차, 권별목차

나. 국가법령정보센터상 분류체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7개 분야 및 44개 편(현행법령집 편 분류체계와 동일)으로 분류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법 분야별 찾기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분야별 분류 목록>

1. 헌법
2. 지방제도
3. 국회
4. 경찰
5. 선거·정당
6. 민방위·소방
7. 행정일반
8. 군사
9. 국가공무원
10. 병무
11. 법원
12. 국가보훈
13. 법무
14. 교육·학술
15. 민사법
16. 문화·공보
17. 형사법

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의 분류체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www.easylaw.go.kr)에서는 크게 18개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주제별 분류 목록>

1.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결혼준비자, 상속, 유언, 이혼, 입양,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 재혼

2. 아동·청소년/교육

가수(아이돌), 근로청소년, 불량식품, 실종아동,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어린이 생활건강,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 식품안전,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영유아교육, 외국인유학생, 입학제도(고등학교),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해외유학자

3. 부동산/임대차

건물 안전관리, 건물 환경관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인중개사, 농지이용·전용, 농지취득,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단독주택건축(증축·대수선), 부동산 경매, 부동산 매매, 부동산등기, 산지전용, 상가 건물 임대차, 아파트 관리, 아파트 분양받기, 아파트 생활, 아파트 입주, 용도변경, 이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택임대차

4. 금융/금전

금융투자자(펀드), 금전거래,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보증, 보험계약자, 보험업종사자, 신용카드 이용자, 은행예금자, 주택연금

5. 사업

가요의 제작·유통, 가족친화기업, 공공정보의 이용, 공장설립,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사회적기업, 옥외광고물 설치자,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유한회사 (설립·운영), 주식회사 설립, 중견기업,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 합명회사(설립·운영), 합자회사(설립·운영), 협동조합 설립·운영

6. 창업

결혼중개업, 귀농인, 네일샵 창업·운영, 동업계약,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미용실 창업·운영,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민박 사업자, 반찬가게 창업·운영, 세탁소 운영자, 소상공인 지원, 음식점 운영, 음식점 창업,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자동판매기 영업자, 전통시장 지원, 청소 및

청소대행업, 체육시설 설치·운영, 커피전문점 창업·운영, 펜션 사업자, 프랜차이즈(가맹계약),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7. 무역/출입국

무역제도 I (수출), 무역제도 II (수입), 비자, 여권, 국적, 수출입 검역, 외국인투자자, 출입국검역, 한·EU FTA, 한미 FTA(상품무역), 한미 FTA(서비스무역)

8. 소비자

가공식품(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계속거래, 농축수산물 소비자, 다단계판매, 먹는물,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안전정보, 인터넷 쇼핑, 전화권유판매, 친환경농수산물, 택배, 화장품

9. 문화/여가생활

면세점 이용,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여가생활 즐기기, 음악저작물 이용, 저작권보호, 캠핑(야영), 해외여행자

10. 민형사/소송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개인파산·면책절차, 개인회생절차, 공탁, 국민참여재판, 나홀로 민사소송, 소액사건재판, 의료분쟁, 행정소송, 행정심판

11. 교통/운전

개인택시운전, 교통·운전,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일반(법인)택시운전, 자동차 구입·관리, 자동차 운전면허, 자전거 운전자, 중고차 매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12. 근로/노동

건설일용근로자, 고령자 고용, 고령자 일자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I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 II (보험급여), 시간선택제 근로자, 실업급여, 여성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유연근무제, 일과 가정생활, 임금, 장애인 고용, 장애인 취업·창업, 퇴직급여제도, 파견근로자, 해고근로자

13. 복지

1인 가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결혼이민자,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금연, 기부 나눔, 기초생활보장, 긴급

복지지원, 노인복지,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신혼부부,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의사상자, 임산부, 자원봉사자, 장기기증·이식, 장애인 교육, 장애인 교육시설,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재외동포, 치매 노인, 한부모가족

14. 국방/보훈

대한민국 여군, 병역의무자(입영 전), 병역의무자(입영 후)

15. 정보통신/기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특허권, 휴대전화 이용자

16. 환경/에너지

1회용품 줄이기, 가정에너지 절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미세먼지,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관리, 자원재활용제도, 환경분쟁 해결

17. 사회안전/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과태료 납부자, 무고죄 피해자·가해자, 범죄피해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성범죄 피해자, 성희롱 피해자, 소방안전 관리, 언론피해자, 응급의료, 인권침해, 전자금융범죄, 집회·시위자,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18. 국가 및 지자체

공유재산 이용자, 국가 공사계약자, 국유재산 이용자, 선거권자(유권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라. 소결

미국의 경우 연방과 주를 포괄하는 법령정보 분류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도 분야별 분류체계 정도만 마련되어 있을 뿐 보다 세부적으로 체계화된 법령정보 분류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

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분류체계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의 분류 체계도 아직 통일되어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과 주로 분리된 미국보다는 한국이 보다 세부적인 체계화된 법령 정보 분류체계를 마련하기는 용이하다고 판단되나, 한국의 법령정보 분류체계 개편 시 연방과 여러 주에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 현황을 참고하여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3. 미국 법령의 검색

미국 법률체계 속에서 특정 사안 또는 한국의 특정 법령 규정과 관련된 조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조문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판례에 의해 정립되어 온 법리에 따라 해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일단 관련된 규정이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 후 비로소 조문의 위치를 검색하게 된다. 이 작업은 통상 관련 판례를 찾는 것보다 용이한 편인데 주로 색인(indexes) 또는 목차(tables)를 통한 검색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 색인(Indexes)을 통한 검색

연방 제정법의 경우 각 법전에 별쇄본 또는 추록으로 첨부된 총색인(General Index to the U.S.C.)을 이용하면 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들 색인은 대부분 교차검색(cross-reference) 및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련 주제들을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색인의 범위가 매우 방대하며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검색수단이 되고 있으나 최신 법률의 제정시점에 비해서는 수록 시점이 다소 늦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 점에서 보면 연간 보완을 원칙으로 하는 U.S.C.의 색인보다도 기본적으로 U.S.C.의 색인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지만 갱신속도가 빠른 U.S.C.A.나 U.S.C.S.의 색인이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U.S.C.A.의 색인은 별쇄본 자체가 매년 갱신되어 발간되며 U.S.C.S.의 경우는 “General Index Update Service”라는 가제식(looseleaf) 색인이 있어서 갱신사항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색인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갱신되고 있다.

한편 U.S. Statute at Large에도 각 권마다 고유의 색인이 정리되어 있으며, U.S. Code Congressional and Administrative News의 일년판 색인이 있으며, 매달 발행되는 USCCAN과 U.S.C.S. Advance에도 색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들 색인 대부분은 통합검색(cross-reference)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해당 주제에 관한 조문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주제어, 유사어 및 세부 유형도 같이 소개하고 있어 해당 주제에 관한 조문을 통합적으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제어를 검색하지 않고 직접 특정 법률명을 검색하는 경우에도 역시 통합검색이 가능하다. 해당 법률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과 관련된 다른 검색어들을 열거해 놓아 해당 법률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목차(Tables)를 통한 검색

특정 법률명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제별 색인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 현재 U.S.C.의 법률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명만 알고 있거나 개정 전의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 검색이 쉽지 않은데, 이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목차가 유용한 검색 도구가 될 수 있다.

먼저 속칭목차(Popular name tables)이다. 속칭목차는 각 법률을 알파벳순서로 정리하여 Statutes at Large 및 U.S.C.의 어느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 목차를 말한다.

U.S.C., U.S.C.A. 및 U.S.C.S.도 속칭목차를 두고 있다. 이들 법전에서는 U.S.C. 일련번호, Public Law 번호 및 Statutes at Large의 인용번호를 수록하고 있다. U.S.C. 등에 수록된 법률들은 대개 한 곳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 편·장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속칭목차를 통하

여 흩어져 있는 각 조문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최신법률에 대한 반영 면에서는 색인과 마찬가지로 U.S.C.보다는 U.S.C.A.나 U.S.C.S.가 다소 빠르다. 특히 U.S.C.A.는 “Alphabetical Table of Laws” 목차를 매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으며, U.S.C.S. 역시 분기마다 발간되는 Cumulative Later Case and Statutory Service에 최신 법률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3) 인터넷을 통한 법령 검색

미국에서는 연방의회 104번째 회기에서 제정법 정보의 전자방식 제공 및 검색 시스템 개발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1995년에 THOMAS(thomas.loc.gov)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일반 대중도 자유로이 연방 입법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THOMAS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았다.

- ① Bills, Resolutions
- ② Activity in Congress
- ③ Congressional Record
- ④ Schedules, Calendars
- ⑤ Committee Information
- ⑥ Presidential Nominations
- ⑦ Treaties
- ⑧ Government Resources

이후 THOMAS 사이트는 연방의회 홈페이지(www.congress.gov)로 흡수되어 확대 개편되었다.

현재 미국의 법령과 판례 등을 포함하는 법률정보는 연방의회, 연방 정부 국가기록원, 연방정부 출판국 등을 비롯하여 코넬대학 로스쿨

(www.law.cornell.edu/uscode), Find Law(<http://www.findlaw.com>), LexisNexis, Westlaw Classic, Bloomberg Law 등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가) 연방의회 홈페이지

연방의회의 홈페이지(<http://www.congress.gov>)에서는 상원·하원의 법률안과 법률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주제별, 법안번호, 법률명, Public Law, Private Law, 위원회, 제안의원 및 제출일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하원 법률개정사무국(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OLRC)에서는 <http://uscode.house.gov> 홈페이지에서 주제별, 속명, Statutes at large 등으로 U.S. Code를 제공하고 있다.

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법률이 공포되는 미국연방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는 국가기록원(NARA)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접근가능한 인터넷 주소는 <http://www.archives.gov> 이다.

다) 연방정부 출판국 홈페이지

미국 연방정부의 출판국(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GPO)이 제공하는 연방 법률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출판국은 연방정부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공식적인 정보를 배포하는 연방기관인데, 기관 홈페이지(<http://www.gpo.gov>)에서 연방 법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출판국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연방의회, 연방행정부, 연방사법부로 대별할 수 있다. 연방 법률에 관한 정보에는 법률안의 요약

및 이 법률안이 연방의회에서 언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법률안 연혁정보(History of Bills), 연방의회에서의 회의정보(Conference Reports), 법률안 전체를 담은 정보(Congressional Bills), Record and House Journal),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의 논의기록(Congressional), 연방 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공법 및 사법(Public and Private Laws), 연방 법률모음집(Statutes at Large), 연방법전(U.S. Code)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특히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공법과 사법(Public and Private Laws), 연방 법률모음집(Statutes at Large), 연방법전(U.S. Code)은 미국 연방의 현행 법률을 검색하는 데에 유용하다.

다) 기타 연방 정부 사이트

<http://www.govinfo.gov/app/browse/category/bills-statutes> 에서도 미국 연방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연방규정 전자포털(www.regulations.gov)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각종 규정을 검색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 관보 홈페이지(www.federalregister.gov)에서는 관보에 등록된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라) 주 법률 검색 사이트

주의 법령은 개별 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입법부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NCSL) 홈페이지(<http://www.ncsl.org>)에서는 50개 주의 법령을 주제별 및 주별로 동시에 검색할 수 있다.

<주별 법령 정보 검색 사이트>

Alabama	www.legislature.state.al.us
Alaska	w3.legis.state.ak.us
Arizona	azleg.state.ar.us
Arkansas	www.arkleg.state.ar.us
California	leginfo.legislature.ca.gov
Colorado	www.leg.state.co.us
Connecticut	cga.ct.gov
Delaware	legis.delaware.gov
District of Columbia	dccouncil.washington.dc.us
Florida	leg.state.fl.us
Georgia	www.leg.state.ga.us
Hawaii	capitol.hawaii.gov
Idaho	legislature.idaho.gov
Illinois	ilga.gov
Indiana	in.gov/legislature
Iowa	www.legis.state.ia.us
Kansas	kslegislature.org
Kentucky	lrc.ky.gov
Louisiana	legis.state.la.us
Maine	janus.state.me.us/legis
Maryland	mlis.state.md.us
Massachusetts	www.malegislature.gov/Legislation
Michigan	legislature.mi.gov
Minnesota	www.leg.state.mn.us
Mississippi	billstatus.ls.state.ms.us
Missouri	moga.mo.gov
Montana	leg.mt.gov
Nebraska	nebraskalegislature.gov
Nevada	leg.state.nv.us
New Hampshire	gencourt.state.nh.us

New Jersey	www.njleg.state.nj.us
New Mexico	legis.state.nm.us
New York	public.leginfo.state.ny.us/menuf.cgi
North Carolina	ncga.state.nc.us
North Dakota	legis.nd.gov
Ohio	legislature.state.oh.us
Oklahoma	www.lsb.state.ok.us
Oregon	www.leg.state.or.us
Pennsylvania	www.legis.state.pa.us
Rhode Island	www.rilin.state.ri.us
South Carolina	www.scstathouse.net
Texas	www.capitol.state.tx.us
Utah	le.state.ut.us
Vermont	www.leg.state.vt.us
Virginia	leg1.state.va.us
Washington	leg.wa.gov/legislature
West Virginia	www.legis.state.wv.us
Wisconsin	legis.state.wi.us
Wyoming	legisweb.state.wy.us

마) 상업적 법령 검색 사이트

상업적인 온라인 법령검색 서비스로는 LexisNexis와 Westlaw Classic 이 대표적이다.

(1) LexisNexis(www.lexisnexis.com)

LexisNexis는 LexisNexis Legal & Professional(Reed Elsevier, Inc.의 한 분과)에서 제공하는 세계적인 웹DB로 법률정보가 중심이지만 뉴스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콘텐츠는 연방과 주, 국제,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DB에 수록된 연방관련 자료는 연방 차원의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발간 자료들이며, 입법자료로 미합중국법령집(U.S.C.) 법조문·입법연혁·연방관보(Federal Register), 행정자료로 미연방행정명령집(C.F.R.),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말부터는 구글 방식의 검색방법을 도입한 LexisNexis Advance도 제공하고 있다.

(2) Westlaw Classic(<http://web2.westlaw.com>)

Westlaw Classic은 Thomson Reuters Westlaw사에서 운영하는 세계적인 법률정보 DB이다. 주요 콘텐츠는 미국 내의 연방과 주의 법률정보와 관련 국제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exisNexis와 더불어 대표적인 법률정보 서비스이다.

수록되는 자료 또한 연방과 주의 입법부·행정부 및 사법부가 발간하는 자료와 각 대학의 저널 등 대부분의 1차 및 2차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Westlaw사는 유료인 Westlaw Classic외에도 무료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FindLaw(<http://www.findlaw.com>)도 운영하고 있다.

<Westlaw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카테고리	법령 정보
연방정부 자료	KeyRules, 연방법원 판례, 연방법령, 소송서류정보, 변론, 소송청구, 소송기록, 법정서류, 법원서류, 배심원 평결, 화해, 판결, 변론취지서, 입법역사, 입법이력, 연방의회 및 행정부 뉴스, 연방행정부 결정사항, 법원 규칙 및 명령, 행정규칙 및 규정, 기타 행정자료, 50개 주 이외의 지역, Current Awareness & Political News, Experts, 실무 가이드 및 법률 교재, 기타 연방 데이터베이스, 심문(Interrogatories) 등
주(州)정부 자료	각 주별 데이터베이스, 50개 주 이외 지역, 판결, 사법부 자료, 법령 및 입법서비스, 소송서류정보, 입법이력자료, 입법역사, 법원 규칙 및 명령, KeyRules, 행정부 관련자료, 자치

	시(市) 자료, 변론, 소송청구, 소송기록, 법정자료, 심리법원 명령, 법원자료, 배심원 평결, 화해, 판결, 변론취지서, 전문가, 배심원에 대한 판사의 지시, 모든 주의 공적기록 데이터 베이스, Current Awareness & Political News, Experts 등
법률 간행물 및 현안자료	법학 잡지 및 법서 정보인 Westlaw Journal Newsletters, Westlaw News and Insight, Law Reviews & Bar Journals in JLR(Journals & Law Reviews) & TP-ALL, Legal Newsletters Listed by Publisher, Legal Newsletters Listed by Title, Legal Newspaper Databases, Warren, Gorham & Lamont Materials, Westlaw Highlights & Bulletins, Notable Trials, Text & Periodical Combination Databases, Periodical Indexes, Practitioners Publishing Company 등
교재 등	ALR(American Law Reports), AmJur(미국법의 백과사전), CJS(Corpus Juris Secundum, 미국법 백과사전), Restatements, ALI 및 ABA(미국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각종 자료 등을 제공
국제 분야	Multi-National Materials,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미 및 카리브해, EU, 유럽 및 영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북미, 남미, 중부사하라 아프리카, 국가별 데이터베이스 등
기타	Tropical Practice Areas, forms, Tribal Materials, Litigation, Medical Litigator, Public Records, Business & News, Directories, Reference, WestlawPRO and Westlaw Libraries 등

(3) Bloomberg Law(<http://www.bna.com/bloomberglaw>)

Bloomberg Law(Bloomberg Finance L.P.사)는 비교적 최근인 2009년에 진입한 법률정보 DB로, 양대 웹DB인 LexisNexis와 Westlaw Classic에 경쟁할 만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내 1차 및 2차 법률정보를 포괄하는 한편, 경제 분야 전문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깊이 있는 기업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Practice Areas 메뉴를 이용하면, 특정 주제에 대한 1차 및 2차 법률자료를 동시에 찾을 수 있다.

(4) 기타 법령검색 사이트

민간 법령정보 회사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는 양적 및 질적으로 풍부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비례하여 이용료 부담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소규모로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려는 로펌 및 개인의 수요에 맞춘 법령 정보 서비스도 다음과 같이 등장하였다.

<기타 법령검색 사이트>

- ① LoislawConnect(<http://www.loislaw.com>)
- ② Fastcase(<http://www.fastcase.com>)
- ③ Casemaker(<http://www.casemaker.us>)
- ④ VersusLaw(<http://www.versuslaw.com>)
- ⑤ JurisSearch(<http://www.jurisearch.com>)
- ⑥ PACER(<http://www.pacer.gov>).

4. 한국 법령검색 서비스와의 비교

가. 공공 무료 법령검색 서비스

한국은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 법제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홈페이지에서 법령 및 판례 등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그 예다.

1) 대한민국관보(<http://gwanbo.korea.go.kr>)

대한민국관보는 인터넷상에서도 동시에 제공된다. 2001년 이전의 관보는 국가기록원 사이트로 링크되어 있다.

2) 국회의 법령 정보 제공(<http://www.assembly.go.kr>)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령제정 절차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다양한 입법자료들을 축적하고 있다.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현행 및 폐지법령, 현안이 되고 있는 법령 제공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출된 의안의 원문과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회의록 등 제공
- 국회 회의록 시스템: 회의별로 개요 및 최근 회의록 등을 상세하게 검색가능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anet.go.kr>)의 국회 법률도서관 코너를 통해 국회회의록, 법령 및 판례, 법률문헌 정보 등 제공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징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조약을 모두 포괄하여 가장 종합적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령의 각 조문별로 관련 판례의 링크를 제공하여 법령해석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는 단순한 법령 조문 외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입법형식별 법령 정보 제공현황

헌법 및 법률에 근거를 둔 다양한 입법형식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조약 및 조례 모두 제공하고 있다.

법령의 경우, 현행 법령뿐만 아니라 시행 예정인 법령까지 포함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신·구법 비교, 하위법령과의 법령체계도, 하위 법령과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3단비교표와 조례위임조문과 위임조례도 같이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는 일반 국민들이 여전히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민이 궁금한 사항이 어떤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 규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고 있다.

5) 외교부 조약정보(<http://www.mofa.go.kr>)

외교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의 정보를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조약의 종류를 양자와 다자로 구분하고, 조약번호와 고

시번호 그리고 전체로 검색하는 외에 국가명·발효연도·서명연도·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다.

6)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자치법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지만 종합적으로 비교·검색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검색할 수 있다.

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는 우리나라 전체 법률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간행된 판례 전부 및 일부 미간행 판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법률 외에도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나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세계 각국의 법제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가별·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제공한다. 각국의 주요 법령을 제공하고, 이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뉴스레터를 작성하여 소개하고, 국가별 법령체계를 작성하여 각국의 법제도에 관한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며,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 및 기업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9)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http://elaw.klri.re.kr>)

한국의 주요 현행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그러나 제공되는 영문법령은 참고용으로, 국문법령과 영문법령 간에 의미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문법령이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

나. 민간 법령검색 서비스

일부 민간사업자는 법률정보를 내용적으로 특화하여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1) 로앤비(<http://www.lawnb.com>)

민간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원으로 국내외 법령 및 판례는 물론이고, 일본판례와 독일판례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내 판례에는 판례공보에 게재되지 않은 판례나 공개되지 않는 하급심판례도 포함되어 있다.

2) 삼일아이닷컴(<http://www.samili.com>)

최신개정세법·최신회계규정·최신개정법률·최신예규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조세와 관련된 조세판례 및 기업법무를 특화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다. 소결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 연방정부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과 주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주 차원에서도 별도로 주 법령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판례법이 발달하여 법령 정보와 관련된 판례, 주석, 유권해석 등의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민간 법제정보 검색 서비스도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한국은 법제처가 주도적으로 통합적인 법제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령, 행정규칙,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국보다는 체계적인 종합 법제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법령 등의 내용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법령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부가가치 높은 법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민간 법제정보 검색 서비스가 미국보다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IV. 미국의 행정절차법

1. 미국의 연방행정절차법

가. 제정 배경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누구든지 법의 정당한 절차(due process of law)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를 행정과정에 도입하기 위하여 1946년 연방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다.

1946년 연방행정절차법은 뉴딜정책 이후 강화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회의 대응전략에서 비롯된 산물로 볼 수 있다. 준입법, 준사법 및 집행 기능을 동시에 행사하는 행정위원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① 행정부에 부여한 위임입법권에 통제를 가하기 위한 사항, 이해관계인에게 입법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한 사항, ② 국민의 권리에 제약을 가하는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를 사법절차에 접근시키기 위한 사항, ③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사후적 구제를 인정하는 사법심사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 등을 입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1946년 연방행정절차법 제정 후 1965년 기관대리법(Agency Practice Act)을 통해 행정절차에서 사인 대리 변호사의 자격 제한을 금지했고, 1972년 연방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Act)을 통하여 연방자문위원회의 공개 및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인정했으며, 1976년 정부일조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을 통하여 행정위원회의 원칙적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80년 평등접근법(Equal Access to Justice Act)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정식재결에서 자신의 주장이 인용된 사람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나. 연방행정절차법의 구성

1946년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은 연방기관이 규칙(regulations)을 마련 공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로,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행정기관이 기관 자체에 관한 사항과 기관의 절차 및 규칙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제3조)
- ② 규칙 제정 절차에 있어서의 국민 참여 보장(제4조)
- ③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제4조)
- ④ 재결(裁決) 절차(제7조)
- ⑤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범위(제10조)

우리 행정절차법이 행정처분 개념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과는 달리,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은 일반적으로 행정입법으로 번역되는 'Rulemaking' 및 재결로 번역되는 'adjudication'으로 분리된 개념을 사용한다. 실제로는 'Rulemaking'은 한국의 행정입법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adjudication'은 한국 행정청의 재결뿐만 아니라 보다 정식적인 판단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 연방행정절차법의 법전화

1946년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은 1967년에 미국법전(U.S. Code) 제5편 제5장에 편입되었다. 미국법전 제5편제5장은 제1절 일반규정(Subchapter I - General Provisions), 제2절 행정절차(Subchapter II - Administrative Procedure), 제3절 미국행정위원회(Subchapter III -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등 3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 중에서도 제2절(제551조부터 제559조까지)이 행정절차법에 해당한다.

미 연방행정절차법 제554조부터 제558조까지는 행정절차의 일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정식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식 재결 절차(formal adjudication)와 행정입법 절차에만 적용된다.

라. 연방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전에 해당하는 제5편제5장 및 제7장은 행정처분을 할 때 지켜야 할 일반원칙을 정하는 실체적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순수한 절차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이 절차적 사항만을 규정할 경우 행정기관에 대하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마. 연방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은 그 정의 규정에서 행정청(agency)을 미국 정부의 각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 후, 행정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5 U.S. Code § 551 (1)].

그리고, 추가적으로 규칙제정(rulemaking) 절차 및 청문 절차의 예외가 되는 사안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적용범위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의회, 연방 법원, 준주(territory) 또는 속령(posession), 콜롬비아 특별구 정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건의 당사자 대표, 군법회의 및 군사위원회, 전시예 전쟁이나 점령지에서 실현되는 육·해·공군의 권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규칙제정 절차의 예외로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미국의 육·해·공군 및 외교상의 직능
- ② 행정청의 내부관리 인사 공공재산 대부금 보조금 부조 또는 계약에 관련된 사항

청문절차의 예외로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법원에서 새로이 법률문제 및 사실문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사항
- ② 미국법전 제5장 제3105조에 따라 임명된 청문관을 제외한 공무원의 선임 또는 재직조건
- ③ 전적으로 검사, 시험 또는 선거에 의하여 결정이 내려지는 절차
- ④ 육해공군 또는 외교상의 사무의 수행
- ⑤ 행정관청이 법원의 대리자 권한으로 행동하고 있는 사건
- ⑥ 근로자대표의 증명 등

2. 한국 행정절차법과의 비교

가. 한국의 행정절차법

1) 한국 행정절차법의 성격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의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당연히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행정절차법이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제3조제1항).

2) 한국 행정절차법의 구성

현행 행정절차법은 총 8개장(제1조~제5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절차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한다. 그 중 제2장 처분절차(제17조부터 제39조의3까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절차법은 실질적으로는 처분절차법이라 할 수 있다.

침해적 처분에 관한 절차로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규정하고 있고, 수익적 처분에 관한 절차로는 처분의 신청 및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처분 일반에 관하여는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처분이유의 제시, 문서주의), 처분의 정정 및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상 공법상 계약 및 행정계획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기관의 모든 행정행위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미국과의 비교

독일의 경우 연방행정절차법은 절차적 사항 외에도 실체적 사항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입법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행정절차법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연방행정절차법이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고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일 및 한국 행정절차법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확정, 공법상 계약 및 확약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행정계획 확정절차의 미비는 행정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신고의 경우에도 자기완결적 신고만 규정하고 있고,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신고절차가 통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3. 한국 행정기본법의 제정 추진

가.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한국 행정절차법은 미국 행정절차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실체적 규정을 많이 두고 있긴 하지만, 행정상 중요한 법제도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독일 행정절차법과 비교하여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체적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다만, 보완방식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포함할 것인지 행정상 중요한 법제도에 관한 실체적 규정을 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며, 법제처에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행정기본법의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안은 2020년 3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국회 제출 예정이다.

나.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 행정의 원칙과 책무 명문화(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 헌법 원칙인 법치행정·평등·비례의 원칙과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 따라 확립된 권한남용금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의 원칙등을 행정의 원칙으로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수행,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행정의 책무로 규정함.

제6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7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의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제9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적극행정)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수행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민참여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서비스 혁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등과 제도를 정비·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업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안 제17조)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르고,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제17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④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한 후 법령등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안 제21조 및 제22조)

- 행정청 스스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적법하게 성립된 처분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등의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철회하는 경우에는 취소·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도록 함.

제21조(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22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 또는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자동적 처분(안 제23조)

-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안 제26조)

- 행정청은 법령 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처분, 영업소 폐쇄 처분과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제26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종료

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가·허가등의 정지·취소·철회처분, 영업소 폐쇄처분과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허가등을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가·허가등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허가 의제 제도의 공통 절차 및 기준(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인허가 의제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관련 인허가 관청과의 사전 협의,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 규정 등 인허가 의제에 필요한 공통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
- 인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는 법률에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거치도록 하고, 주된 인허가 관청은 관련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의 처리기준을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사업 등을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함.

제28조(인허가의제의 절차 등) ① 인허가의제[하나의 인가·허가등(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을 받으면 그와 관련된 여러 인가·허가등(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관청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된 인허가 관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련 인허가 관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제28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관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② 주된 인허가 관청은 관련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의 처리 기준을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주된 인허가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 등을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를 마치기 전이라도 주된 인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치지 아니한 관련 인허가는 그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28조제2항·제3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1조(인허가의제의 통지 및 사후관리) ① 주된 인허가 관청이 주된 인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련 인허가 관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행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및 이 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위임 규정)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안 제33조)

-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제33조(신고) 신고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리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공법상 계약(안 제38조 및 제39조)

-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하여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법상 계약의 체결 방법, 변경 요구, 해지 사유, 변경·해지 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

제38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의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법상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및 무효) ①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은 공법상 계약이 체결된 후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어 계속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시 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게 매우 불공정할 경우
2. 공법상 계약을 이행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③ 공법상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미리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법상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공법상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공법상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안 제44조)

- 일부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
- 이의신청 기간,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정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제44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이나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안 제45조)

- 제재처분을 제외한 처분에 대해 재심을 통하여 다룰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 등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45조(처분의 재심사) ① 처분(제재처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재심을 통하여 다룰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등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등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등이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재심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의 제21조에 따른 취소와 제22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정비 원칙(안 제47조 및 제48조)
 -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영업과 관련되는 인가·허가 등에 관한 법령 등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해당 법령 등의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할 때에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제47조(인가·허가등의 규정방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인가·허가등에 관한 법령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해당 법령등의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 안전, 환경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규제에 관한 법령등의 입안·정비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때에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령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은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안의 조문 목록>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기간의 계산

제4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5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

제2장 행정의 원칙과 책무

제1절 행정의 원칙

제6조(법치행정의 원칙)

제7조(평등의 원칙)

제8조(비례의 원칙)

제9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0조(신뢰보호의 원칙)

제11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2절 행정의 책무

제12조(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제13조(적극행정)

제14조(국민참여 보장)

제15조(행정서비스 혁신)

제16조(행정 협업)

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제17조(법 적용의 기준)

제18조(처분의 효력)

제19조(결격사유)

제20조(부관)

제21조(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22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23조(자동적 처분)

제24조(재량행사의 기준)

제25조(제재처분의 기준)

제26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7조(과징금)

제2절 인허가의제

제28조(인허가의제의 절차 등)

제29조(인허가의제의 기준)

제30조(인허가의제의 효과)

제31조(인허가의제의 통지 및 사후관리)

제32조(위임 규정)

제3절 신고 및 확약 등

제33조(신고)

- 제34조(확약)
- 제35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 제36조(수수료 및 사용료)
- 제4절 행정계획 및 공법상 계약
 - 제37조(행정계획)
 - 제38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 제39조(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및 무효)
- 제5절 행정상 강제
 - 제40조(행정상 강제)
 - 제41조(이행강제금)
 - 제42조(직접강제)
 - 제43조(즉시강제)
- 제6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 제44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45조(처분의 재심사)
-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 제46조(행정의 입법활동)
 - 제47조(인가·허가등의 규정방식)
 - 제48조(규제에 관한 법령등의 입안·정비 원칙)
 - 제49조(행정법제의 개선)
 - 제50조(법령해석)
 - 제51조(정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다. 행정기본법의 기대 효과

행정기본법 제정 및 이를 통한 행정법제 혁신은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며, 한국 행정법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미국의 분야별 법제도 사례

1. 미국의 식품영업 인허가 관련 법제도

가. 식품관리 정부조직 및 소관 법령

1) 중앙 행정기관

□ 식품영업 인허가 기관

○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청(FDA)

-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에 대한 등록 요건 집행

□ 관련 법령

○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제415조 - 식품시설의 등록²⁾

-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식품시설에 대한 등록·갱신 등에 관한 권한 규정

○ 「연방규정」 제21편 식품 및 의약품, Part 1 공통 시행 규정, Subpart H - 식품시설의 등록

- 식품시설에 대한 등록 조건, 필수정보, 절차 및 정지 등에 관한 세부 요건 규정

○ 「연방규정」 제21편 식품 및 의약품, 108.25 - 산성식품, 108.35

- 밀봉용기에 포장된 저산성식품의 열처리가공
- 산성식품 및 저산성 통조림식품의 제조공정 및 시설 등록 등에 관한 요건

○ 「원자력법」

- 식품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규제 및 영업허가 (license) 등

2) 지방 행정기관(미국 캘리포니아 주)

2) [21 U.S.C. § 350d]

□ 식품영업 인허가 기관

-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 및 소속 카운티 및 시 집행기관
 - 식품의 제조·가공·저장·유통업 및 소매업에 관한 규정 제정

□ 관련 법령

-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 규정」³⁾
 - Part 5. Sherman Food, Drug, and Cosmetic Laws, 제5장. 식품: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루어지는 식품의 제조·가공 및 포장 등의 영업형태에 대해 규정
 - Part 7. 캘리포니아 소매 식품 규정(California Retail Food Code), 제13장. 준수 및 집행: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매 단위 식품시설을 운영하는 영업형태에 대해 규정

나. 식품영업별 인허가 제도

1) 개요

- (연방정부) 미국 연방차원에서 식품영업자에 적용되는 인허가 유형은 모든 소비식품에 적용되는 식품시설 등록제와 특정 영업형태(산성식품 및 저산성통조림식품 제조(등) 또는 방사선 조사업)에 적용되는 등록제(registration) 또는 영업허가제(license)가 있음
 - 미국 내 모든 소비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 영업자는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제415조 ‘식품시설의 등록’과 관련 연방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식품의약품청에 등록하여야 함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제415조 - 식품시설의 등록

(a) 등록

(1) 공통 장관(보건복지부)은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소비될

3) 캘리포니아 보건 안전 규정(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식품을 제조·가공·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장관에 등록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등록이 이루어지려면
 (A) 국내 시설의 경우, 시설 소유주, 운영자 또는 시설책임자는 장관에게 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성식품 또는 저산성 통조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하는 시설 영업자는 각각 「연방규정」 제21편의 제108.25(c)(1)항과 제108.35(c)(1)항에 따라 해당 시설과 공정계획서를 식품의약품청에 등록하고 제출하여야 함
 - 식품의 방사선 조사업에 종사하는 시설 영업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영업허가(license)를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은 주 정부에 위임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청은 식품에 처리하는 방사선을 식품첨가물로 간주하므로 영업자는 식품첨가물 사용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함
- (주 이하 지방정부) 미국은 연방제 특성상 주 정부, 카운티 및 시에서 식품영업별 인허가 제도를 자체적으로 제정·관리하고 있으나 지역별 관리 형태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보건 및 안전 규정 ‘Part 5. Sherman Food, Drug, and Cosmetic Laws’, ‘제5장. 식품’, ‘ARTICLE 2. 등록’ 제110460항에 따라, 주에서 식품을 제조·포장·보관하는 영업 종사자에게 등록(Registration)을 요구하는 반면, 뉴욕 주는 ‘농업마케팅법 Section 251-z-3’에 따라 식품가공시설의 영업허가증(license) 취득을 규정함
 - 식품소매업 및 유사 영업 형태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보건 및 안전 규정 ‘Part 7. 소매 식품 규정’ 제114381항에 따라 카운티 또는 시 관할당국의 허가가, 뉴욕 주는 ‘뉴욕주 규정 제10편 보건부, 제1장 위생규정, Part 14 식품서비스시설(Food Service Establishments)’에 따라 관할 당국의 허가가 필요함

<미국의 식품영업별 인허가 관할기관 및 유형>

	관할 기관	식품영업 유형	인허가 유형	근거 법령
연방	식품의약품청 (FDA)	제조·가공·포장·보관	등록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산성식품 및 저산성식품 제조·가공·포장	등록	
		방사선조사	영업허가 (license)	원자력법
주정부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CDPH)	제조·가공·포장·보관	등록	캘리포니아 보건 안전 규정
		식품소매업	허가 (Permit)	캘리포니아 보건 안전 규정

2) 허가(Permit) -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

대상 영업

○ 소매단위 식품시설*

* 식품시설(Food Facility)은 소매 수준에서 식품을 저장·준비·포장·제공·판매 또는 그 밖에 제공하는 영업소를 의미함(캘리포니아 '소매 식품 규정')

허가 신청

○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를 예로 들면, 식당·마켓, 학교 카페테리아, 트럭·카트 등을 통해 식품을 보관·준비·포장·제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카운티 환경보건기관에 허가 (Health permit)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허가(Permit) 심사 절차 등

○ (시설 점검)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 캘리포니아 주 '보건 안전 규정'상의 요건과 적용될 조례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점검이 진행됨

3) 등록 - 식품의약품청(FDA)

□ 대상 영업

- 미국에서 소비될 식품을 제조·가공·포장 또는 보관하는 식품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에서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해외시설: 해외시설의 식품이 미국이 아닌 다른 해외시설에서 포장을 포함한 추가적인 제조/가공 과정을 거치는 경우
- 농장
- 소매식품시설
- 외식업소
- 소비자를 위하여 식품을 준비하거나 바로 제공되는 비영리 식품시설
- 어선
- 「연방 식육검사법」, 「가금제품 검사법」, 「알제품 검사법」에 따라 시설 전체가 농무부의 전적인 규제를 받는 시설

□ 등록 절차

- 식품의약품청 홈페이지에서 시설 등록이 가능하며, 다음 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 식품업체명, 주소지, 전화번호
- 선호하는 우편주소지(상기 주소지와 다른 경우)
- 모회사명, 주소 및 전화번호(자회사인 경우)
- 시설에서 사용하는 모든 상호명
- 시설을 책임지는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시설에서 제조/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등록양식(Form FDA 3537)상의 식품 카테고리
- 각 식품 카테고리별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 담당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이 식품의약품청(FDA)의 시

설 점검을 허용하겠다는 보증

-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사실이며, 등록 제출을 위임받은 자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러한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보증

□ 사후 관리

- (등록 갱신) 식품시설의 등록은 매 짝수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하여야 함
- (등록 취소) 식품업체는 시설운영 중단, 섭취용 식품 제공 중단 또는 소유주 이전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신고 시 다음의 정보를 제출해야 함

- 시설 등록번호
- 국내 또는 해외시설 여부
- 시설명 및 주소
- 취소 신고인의 이름, 주소, 전자우편 주소(가능한 경우)
- 담당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등록취소의 건이 아닌 경우, 제출을 위임받은 자의 전자우편 주소
-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사실이며, 등록 제출을 위임받은 자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러한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보증

□ 별도의 등록 또는 허가(License)가 필요한 영업

- (산성식품 또는 저산성 통조림식품) 해당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하는 영업자는 시설 등록과 해당 식품에 대한 제조 공정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등록이 수리되면 별도의 시설번호를 부여받게 됨
- (식품의 방사선조사)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 등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에 방사선 처리를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청에 식품첨가물 청원을 제출하여야 함
- (참고) 연방규정 제21편 Part 179 - 식품의 생산, 가공 및 취급 시 방사선조사

4) 등록 - 캘리포니아 주

□ 대상 영업

-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공식품을 제조·포장 또는 보관하는 영업

□ 등록 신청

- 관련 영업자는 영업 시작 30일~60일 전에 가공식품등록(PFR, Processed Food Registration) 신청 서류를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CDPH)에 제출하여야 함
-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의 식품의약품국(Food and Drug Branch, FDB)은 가공식품등록(PFR) 신청서를 접수와 확인하여 처리하고 나면 식품의약품국 검사 담당자가 등록 전 시설 점검 계획을 잡기 위하여 신청인에 연락을 취함

□ 등록 심사 절차

- (시설 점검) 식품 영업장이 '캘리포니아주 보건 안전 규정'과 관련 연방규정(CFR)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주요 점검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사업장 및 제품 정보) 조직 구조, 관리감독 전문성, 제품 및 원료 설명서, 원료 출처, 제품 유통, 회수 절차
 - (제품 및 공정 관리) 입고 원료 및 점검 절차, 미생물 연구 등 공정 검증, 권한 활용 및 접근성, HACCP 요구사항 등 공정 모니터링 및 품질 관리, 냉장, pH 보정, 수분 활성도 감소, 식품 첨가물, 상업적 살균소독, 가스치환포장, 포장견고성시험 및 제품 유효기한 검증, 시설 내 보안 적합성
 - (위생 관리 절차) 소독 검사, 세척 절차, 소독 절차, 장비 및 건물 유지보수, 해충관리제, 원료 취급 및 보관 절차
 - (제품 표시 및 광고) 원료 표시, 영양학적 정보, 용기 함량 표시, 건강 및 영양 강조 표시
- (등록증 발급) 시설의 준수 현황에 문제가 없으면 점검일부터 2주

4)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수산물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 규정, 주스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 규정, 식품 표시 요건 등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되나, 위반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개선조치가 있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검사 재 실시 대상이 됨

□ 사후 관리

- 가공식품등록 발급 이후 연례적으로 또는 별도 명시사항에 따라 사전 계획 없이 정기 검사를 진행함

다. 인허가 관할 기관 및 인허가권에 대한 관리 감독 제도

1) 인허가 기관의 권한 및 준수 사항 규정

□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제415(b)항 - 식품시설의 등록 정지

- 제415(b)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청(FDA)은 등록시설이 제조·가공·포장·수령·보관한 식품이 사망 또는 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정지 처분(명령)할 수 있음
 - (식품) 시설이 제조·가공·포장·수령·보관한 식품이 인체 건강에 중대한 부작용을 유발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시설) 시설이 그러한 가능성을 만들거나 원인이 되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원인이 있거나 알고 있으면서 식품을 포장·수령 또는 보관한 경우

□ 「캘리포니아주 보건 안전 규정」

- (식품의 가공 등에 관한 영업) 제110467항에 따라 ‘Part 5. Sherman Food, Drug, and Cosmetic Laws’의 조항 및 이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가공식품을 제조·포장·보관하는 자에게 등록 발급을 거부하거나 등록 정지 또는 철회를 할 수 있음
- (식품 소매업) 제114405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지역 집행당국이 허가를 정지 또는 철회할 수 있음

2) 지방 행정기관의 인허가권에 대한 중앙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규정

□ 「캘리포니아주 보건 안전 규정」

- 'Part 5. Sherman Food, Drug, and Cosmetic Laws, 제5장. 식품, ARTICLE 11. 지방 집행'에 따라 보건부(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보건부가 관련 조항에 따라 도입된 규정들을 집행하지 않거나 이를 이행할 자격이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권한을 철회할 수 있음

2. 미국의 공장 설립 관련 법제도

가. 캘리포니아 주의 공장 설립 허가제도

□ 산호세 시의 관련 규정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는 시 정부 소관으로 산호세 시 규정(Municipal Code)에서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 및 제도를 규정
 - 공장설립에 관련된 법률에는 5개의 주요 장(Title)이 있으며, 이들 법률에 따라 시의 관련 규제를 적용⁵⁾
 - 계획허가에 관한 사항은 20장 및 21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주로 24장에 규정

- 이들 계획허가와 건축허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구역(zone)은 주거(Residential), 상업(Commercial), 산업(Industrial) 등 세 구역으로 구분

- 산업 구역에 속하는 공장설립의 경우, 다시 산업공원(Industrial Park, IP), 경공업지역(Light Industrial, LI), 중공업지역(Heavy Industrial, HI) 등 세 가지 산업 지역(Industrial Zoning District)으로 구별하여 규제를 적용
 - 산업공원은 R&D, 제조, 조립, 실험, 사무실 등 용도를 포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설계를 통하여 중화될 수 있는 위험물질을 다룰 수 있는 경우에 해당
 - 경공업지역은 R&D 외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산업공원과 마찬가지로 중화되지 아니한 위험물질 사용은 제외되나, 산업공원보다 위험물질에 대한 수용도는 높음
 - 중공업지역은 R&D 외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업종이 해당

5) Municipal Code Title 17, 18, 19, 20, 24 등

- 허가의 종류는 위의 산업 지역과 해당 업종에 따라 행정허가 (Administrative Permit), 허가(Permit), 특별사용허가(Special Use Permit), 조건부사용허가(Conditional Use Permit) 등 받아야 하는 허가의 종류가 다름
 - 각 산업 지역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허가하기 위하여 본래 용도를 벗어나는 사용에 대해 허가, 특별사용허가 및 조건부사용허가의 순으로 허가의 강도가 점점 높아짐
 - 보통 제조업의 경우, 주 업종이 경공업에 가까운 업종은 산업공원 및 경공업지역에 허가를 받으면 되나, 중공업에 가까운 업종은 중공업지역에서만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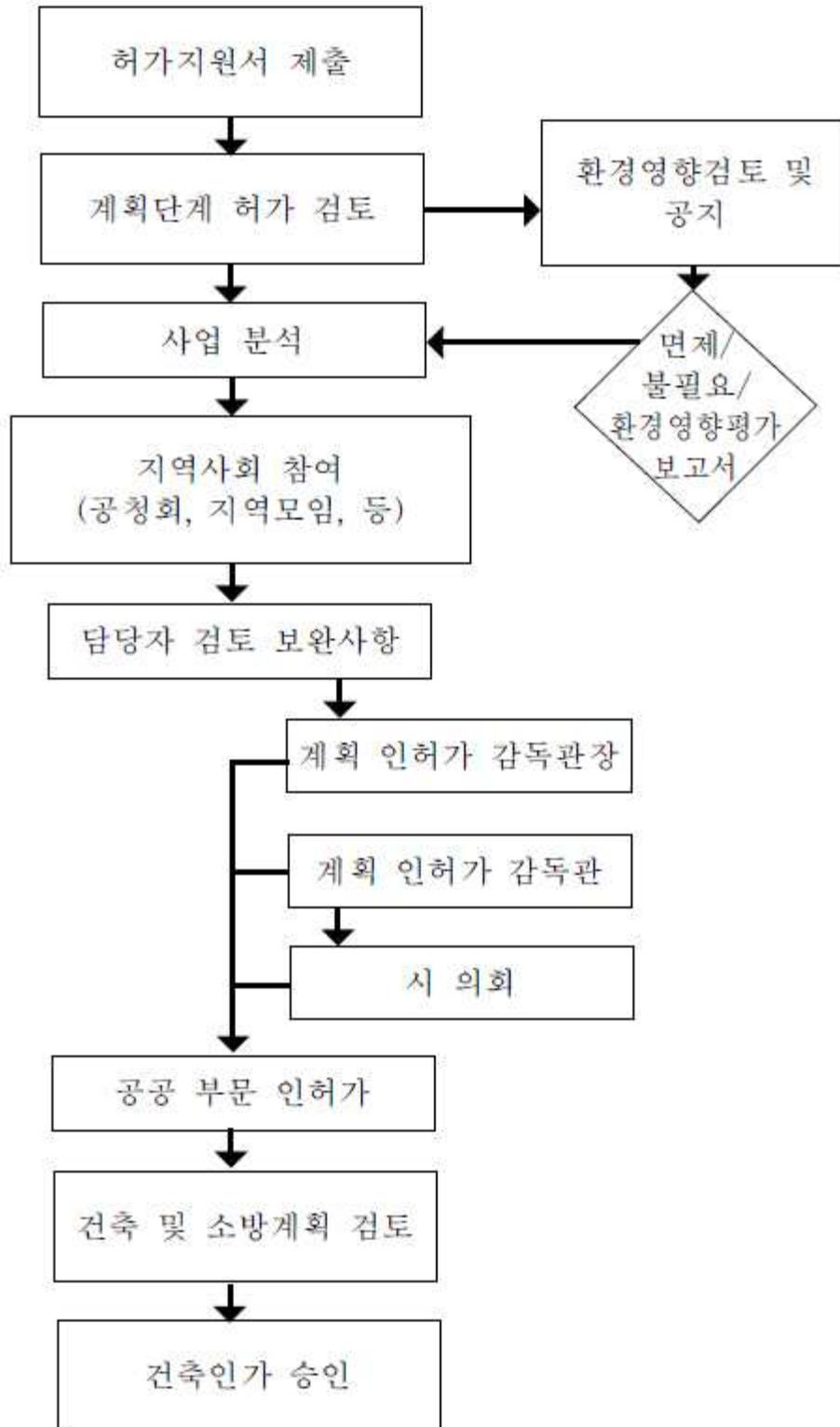
- 경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에 공장이 설립되는 제조업의 경우, 허가는 통상 부지개발허가(Site Development Permit)가 되며, 용도변경(rezoning)을 통해서만 허가가 이루어지는 계획개발허가(Planned Development Permit)와는 차별되기 때문
 - 부지개발허가는 단순히 해당 지역에서의 용도에 맞게 공장설립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며, 계획개발허가도 불필요

□ 공장설립 허가 절차

- 모든 공장설립 계획에 대한 허가절차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특히 설립될 공장이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허가절차와 소요기간이 비례
 - 공장설립 계획에 대해 설립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재 입지와 미래의 토지 사용계획을 제시하는 일반계획(General Plan)을 검토
 - 이후 첫 번째 단계로서 해당 허가를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료를 포함하여 해당 신청서를 제출
 - 신청된 허가요청 사업에 대해 계획허가 부처에서 먼저 검토하게 되며, 특히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경우 통상 환경영향검토

- (Environmental Impact Review)도 동시에 수행
 - 환경영향검토의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의 제출이 면제 (Negative Declaration)되거나 환경영향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Report)를 제출
- 이후 사업의 분석(Project Analysis)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인 공청회(Public Hearing)를 개최
 - 사업의 성격이나 환경 및 경제적 영향 등에 따라 시의회(City Council)이나 시 허가 감독관(Planning Commissioner)이 최종적으로 공장설립 계획허가에 대해 결정
- 소방 허가(Fire Plan Check) 또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허가단계에 해당
- 공공부문의 허가(Public Works)는 일부 계획단계 허가 결정사항에 맞추어 진행되지만 독립적으로 허가받는 단계
 - 상하수도의 간선 배관으로부터 공장까지의 연결배관 및 보행자 도로나 주차장 등의 사항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차원에서의 공공도서실 건립이나 주변학교에 후원금 기부 등과 같은 사항을 취급
- 건축허가(Building Permit)는 5가지의 주요사항 검토(Review)와 건축단계의 감사(Inspection)로 구성
 - 5가지의 주요 검토사항은 구조검토 (Structural/Architectural Review), 전기검토 (Electrical Review), 기술검토 (Mechanical Review), 수도검토 (Plumbing Review), 소방검토 (Fire Review) 등이며, 공장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수도와 전기에 대한 검토가 추가

<산호세의 공장설립 절차도>



VI. 결론

1. 법제도 통계 관리 강화 필요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별다른 법제도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현행 법령 건수 등 일부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다.

<현행 법령 건수>

> 현행법령

2020-05-04 기준



2020. 5. 4. 현재 법령 건수는 4984건, 자치법규 건수는 11만4528건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법령 등의 건수가 매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못하고 월 1회 정도 통계가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법령 현황>

> 연도별 법령 현황

(2020-05-04) 현재

선택

검색

연도\구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계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2020	1,507	23	1,737	15	1,336	10	4,580	48
2019	1,484	36	1,722	30	1,326	23	4,532	89
2018	1,448	31	1,692	27	1,303	18	4,443	76
2017	1,417	20	1,665	27	1,285	15	4,367	62
2016	1,397	31	1,638	39	1,270	31	4,305	101

이 통계는 법령 공포대장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서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도 명시적으로 폐지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다릅니다.

법제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성격의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부처별 규제 현황을 조문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 전반에 관한 통계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부처별 규제 현황 조회>

부처별 규제

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처·청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특허청	기상청
금융감독원				

따라서 현재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관리가 부실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개별 법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법제도(규제 포함)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2. 법제도 분류체계 도입 필요

현재 대한민국헌행법령집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법령 목록 등을 확인하여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도 법제도와 관련된 주요 항목별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작성하여 법제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입안심사기준 세부기준>

1. 총칙 규정
 - 가. 목적 규정
 - 나.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 다. 정의 규정
 - 라. 해석 규정
 - 마. 국가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 바.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 사.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2. 실체 규정
 - 가. 인허가 제도 일반론
 - 나. 허가
 - 다. 특허

- 라. 인가
- 마. 등록
- 바. 신고
- 사. 지정
- 아. 인허가 등의 의제
- 자. 결격사유
- 차. 과징금
- 카. 부담금
- 타. 연체금과 가산금
- 파. 행정강제
- 하. 보조·출연·출자·융자
- 거.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 너. 조세법 규정
- 더. 재정·회계 제도
- 러. 기금
- 머. 자격 부여
- 버. 외국인의 지위
- 서. 검사
- 어. 위원회
- 저. 특수법인
- 처. 겸직과 영리업무의 금지
- 커. 행정지도
- 3. 보칙 규정
 - 가. 수수료
 - 나. 출입검사와 질문
 - 다. 보고의무
 - 라. 청문
 - 마. 권한의 위임·위탁
 - 바. 직무대리(職務代理)
 - 사. 행정업무의 대행(代行)
 - 아. 공표

- 자. 행정쟁송
- 차. 손실보상(損失補償)
- 카. 손해배상(損害賠償)
- 타.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 파.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4. 벌칙 규정
 - 가. 벌칙의 규정 방식
 - 나. 구성요건
 - 다. 법정형
 - 라. 과실범, 미수범, 공범, 형의 감면, 친고죄 등
 - 마. 「형법」의 적용 제한 규정
 - 바. 양벌 규정
 - 사. 행정질서벌(과태료)
- 5. 부칙 규정
 - 가. 시행일에 관한 규정
 - 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다.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규정
 - 라.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 마. 적용례에 관한 규정
 - 바. 특례에 관한 규정
 - 사.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 아.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 자. 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한민국헌행법령집의 분야별 분류는 분야별로 어떤 법령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알 수 있을 뿐 개별 법령의 조문이 어떤 법제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한계가 있고,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분류체계 역시 누락되어 있는 법제도가 적지 않고 개별 법령의 조문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법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지

만 법령상 법제도가 총 몇 건인지, 법제도 중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 몇 건인지, 허가 등 개별 법제도/규제가 각각 몇 건인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법제도에 해당하는 용어로 검색하여 대략적인 근사치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어떤 법제도가 여러 법령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해당 법제도가 법령별로 동일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일부 차이가 있는 유사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세부 유형별 통계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현황·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법령에 규정된 각종 법제도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법제도 분류체계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등 다단계로 마련하여 각각의 단계별 분류에 따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법제도 분류체계 예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규제	인허가	허가	1분류) 대물적 허가 대인적 허가 혼합적 허가 2분류) 행위허가 영업허가 자격면허	건축허가 유흥주점영업허가 ○○○허가 ○○○허가	허가 신청 변경허가/변경신고 허가기준(네거티브/포지티브) 허가취소/정지 행정처분기준 청문 유효기간 휴업·폐업 행정처분효과승계 지위승계 허가증

				위반 시 제재
		등록 ○○ ○○	자동차등록 식품제조·가공 업등록 ○○○등록 ○○○등록	등록 신청 변경등록/변경신 고 등록기준 등록취소/정지 청문 유효기간 휴업·폐업 등록증 위반 시 제재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를 수리를 요하 는 신고	건축신고 식품운반업신고 ○○○신고 ○○○신고	신고 수리거부 변경신고 영업정지 영업장폐쇄 유효기간 휴업·폐업 신고증 위반 시 제재
		기타 ○○ ○○	○○ ○○	○○○ ○○○
○○	○○	○○	○○	○○○
	○○	○○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와도 연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통계청·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업종별통계와 법제도통계가 연계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B. 광업(05~08)

- C. 제 조 업(10~34)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 F. 건 설 업(41~42)
- G. 도매 및 소매업(45~47)
- H. 운수 및 창고업(49~52)
-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J. 정보통신업(58~63)
- K. 금융 및 보험업(64~66)
- L. 부동산업(68)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 P. 교육 서비스업(85)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97~98)
- U. 국제 및 외국기관(99)

3. 법제도 분류체계와 법령정보시스템의 연계 필요

법제도 전체를 포괄하는 자세한 법제도 분류체계를 마련한다고 해도 그 분류체계가 법령 조문과 연계되지 않으면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법령에 있는 각각의 조문이 법제도 분류체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연계되어야 법제도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법제도별 현황 및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 법령의 입안부터 심사 및 공포까지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공포되는 즉시 공포되는 법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제도 분류체계와 개별 법령의 조문을 연계하는 작업은 조문의 내용이 어느 법제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스템에서 100% 자동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제처 담당 법제관실 및 법령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들어 확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 제·개정되는 법령의 경우 공포 단계에서 법제도 분류체계와의 연계 작업을 하면 되지만, 기존 법령 조문의 경우 기간을 정해 놓고 한꺼번에 연계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전체 법령의 조문이 법제도 분류체계와 연계되어야 법제도 전체 현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고부가가치 법제정보 생성 및 활용 필요

현재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 통계는 현행 법령 건수 등을 제공하는 기초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법제도 분류체계와 개별 법령 조문이 연계되면 법제도별로 다양한 통계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법제처에서 종합적인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 주도로 법제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분야별로 특화된 법제정보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야별 특화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에서 민간 법제정보 제공 서비스가 활성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간에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곳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법제도 통계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법제정보를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법제도 중 규제 현황 및 개선에 관한 관심이 높

으므로 법제도 중 규제에 해당하는 법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통계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법제도 통계 및 규제 통계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으로는 법령 심사 업무와 규제 심사 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도 법제도 분류체계와 맞추어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기대 효과

선진 법치국가의 토대가 될 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다양한 입법 개선 수요 도출·검토 및 외국 법제와의 비교·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력 확보,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정보화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정보 수집,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제정보 제공, 입법절차에서 입법의견 수렴 활성화, 법령 입안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 법령안 심사절차 개선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이러한 법제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정보화시스템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제도를 유형별·분야별·단계별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제도분류체계가 마련되고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 법제정보화시스템과 통합·연계될 경우 현재와 같이 단순히 법령의 내용을 보여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법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수의 유용한 법제 통계 자료 도출이 가능해지며,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입법 추진을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법제도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법제도 유형별·분야별·단계별로 고도화된 법제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국민의 입법 개선 의견 제출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및 사이트>

- 식품안전정보원, “주요국 식품 영업 인허가 제도”, 2018
장상윤, “미국의 기업활동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2017
이세정, “행정절차법 개선 방안 연구”, 2017
한국공법학회,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2016
서울대 산학협력단, “국가법령정보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2015
국회도서관,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2014
건국대 산학협력단, “미국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2010
김범준,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 2010
신영수, “미국 법전의 편재방식과 법령정보의 검색·인용방법”, 2010

- | | |
|--------------|---|
| 미국 연방의회 | http://www.congress.gov |
| 미국 정부 포털 | http://www.usa.gov |
| 미국 연방법전 | http://uscode.house.gov |
| 미국 연방 법률 모음 | http://www.govinfo.gov/app/browse/category/bills-statutes |
| 미국 연방규정 전자포털 | http://www.regulations.gov |
| 미국 연방정부부처 목록 | http://www.loc.gov/rr/news/fedgov.html |
| 미국 연방정부 관보 | http://www.federalregister.gov |
| 미국 연방정부 출판국 | http://www.gpo.gov |

-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
| 국회 | http://www.assembly.go.kr |
|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 |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http://www.elis.go.kr |
| 규제정보포털 | http://www.better.go.kr |